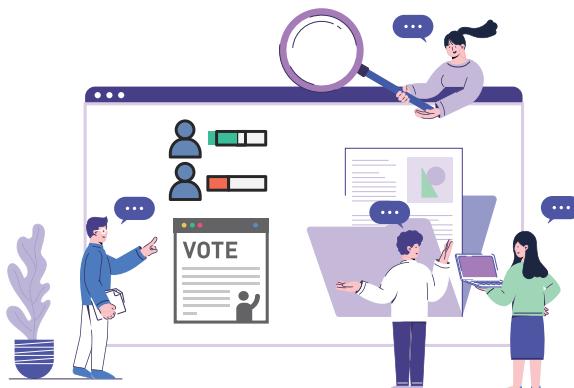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138-230015-14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2024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www.nesdc.go.kr

일러두기

- 본 가이드북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근거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신고, 실시, 등록,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가이드북 발간 이후 관련 법규 및 기준의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가이드북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의 표기

- 공직선거법 → 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
- 선거여론조사기준 → 기준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운영규칙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중앙심의위원회
-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시·도심의위원회

CONTENTS

제1장

| | |
|----|-----------------|
| 9 | 선거와 여론조사 |
| 10 | 1. 선거여론조사의 의의 |
| 10 | 2. 선거여론조사란 |
| 11 | 3.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11 | 4. 선거여론조사기준 |
| 12 | 5.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요 |

제2장

| | |
|----|---------------------|
| 15 | 선거여론조사기준 |
| 16 | 1.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의미 |
| 16 | 2.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
| 16 | 3.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적용대상 등 |
| 17 | 4.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시 처벌 |

제3장

| | |
|----|---------------------------|
| 19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
| 21 | 1. 개요 |
| 21 | 2. 등록 신청 |
| 23 | 3. 선거여론조사기관 정보 공개 |
| 23 | 4. 변경 등록신청 |
| 23 | 5. 등록 취소 |
| 24 | 6. 등록 관련 위반시 처벌 |
| 24 | 7.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조사 |
| 25 | ■ 첨부 1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
| 26 | ■ 첨부 2 :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 27 | ■ 첨부 3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



제**4**장

| | |
|-----------|--|
| 29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
| 30 | 1. 신고대상 |
| 31 | 2. 신고 제외대상 |
| 32 | 3. 신고기한 |
| 32 | 4. 신고방법 |
| 32 | 5. 신고처 |
| 32 | 6. 신고사항 |
| 35 | 7. 실시 신고의 보완 |
| 35 | 8. 선거비용 산입 |
| 36 | 9. 실시 신고 위반 시 처벌 |
| 37 | ■ 첨부 4 : 2023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
| 38 | ■ 첨부 5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예시) |
| 40 | ■ 첨부 6 : 중앙및 시 · 도 심의위원회 연락처 |

제**5**장

| | |
|-----------|---------------------|
| 43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
| 45 | 1. 개념 |
| 45 | 2. 제공 요청 |
| 47 | 3. 요청서의 보완요구 등 |
| 48 | 4. 요청서 송부 |
| 48 | 5. 가상번호 수 조정 |
| 48 | 6. 비용 부담 및 납부 |
| 49 | 7. 제공 |
| 51 | 8. 제공사실 등 고지 |
| 51 | 9. 제공 거부의사 표시 |
| 52 | 10. 반납 및 폐기 |

52 11. 생성 · 제공 관련 위반 시 처벌

54 ■ 첨부 7 :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

55 ■ 첨부 8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56 ■ 첨부 9 :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제6장

59 | 선거여론조사 실시

1. 일반적 준수사항
 2. 시기별 유의사항
 3.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4.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5.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6. 성실 응답자 전화요금 할인 혜택
 7.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및 제출
 8. 선거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위반 시 처벌

제7장

69 |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 8 장

| | |
|-----------|------------------------------------|
| 91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 92 | 1. 공표의 의미 |
| 92 | 2. 최초 공표·보도 |
| 93 | 3. 인용 공표·보도 |
| 93 | 4. 추가 가중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 94 | 5.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 결과 공표·보도 |
| 94 | 6. 가중값 배율 등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분석 결과 공표·보도 |
| 94 | 7.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
| 96 | 8. 공표·보도 금지사항 |
| 97 | 9. 공표·보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

제 9 장

| | |
|-----------|--------------------------------------|
| 99 | 선거여론조사 심의 |
| 100 | 1.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
| 101 |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
| 102 | 3.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102 |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
| 103 | 5. 심의·결정사항 등 공개 |
| 105 | ■ 첨부 12 :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 106 | ■ 첨부 13 :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제 10 장

| | |
|-----|----------------------------|
| 109 |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 · 조치 |
| 110 | 1. 조사 근거 |
| 110 | 2. 조사 주체 |
| 110 | 3. 조사권 발동요건 |
| 111 | 4. 조사 대상 |
| 111 | 5. 조사 권한 |
| 112 |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 114 | 7. 위반행위 조사 관련 처벌 |
| 115 | 8. 유형별 위반사례 예시 |
| 131 | ■ 첨부 14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133 부 록

| | |
|-----|-------------------------------|
| 134 | 1)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
| 184 | 2) 선거여론조사기준 |
| 202 | 3)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 1 장

선거와 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의 의의
2. 선거여론조사란
3.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4. 선거여론조사기준
5.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요

제 1 장 | 선거와 여론조사

01 선거여론조사의 의의

- 민주국가에서 여론이란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표명하는 의견의 집합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표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여론조사를 통하여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치인이나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나,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기능도 갖고 있음.

02 선거여론조사란

- 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부를 판단함.
※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3. 9. 26. 2003도2230 판결).

◆ 다만, 법 § 8의8⑧에서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여론조사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현안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일반적인 정치현안 여론조사일지라도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현안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당해 선거’와 관련지어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정당지지도’ 등 선거여론조사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법§108 등 관련 규정 준수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
-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03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선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04 선거여론조사기준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보도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정권을 부여하였음.

05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요

0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정수** : 9인 이내
- **선정대상** :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관련 기관 ·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 : 3년

02

선거여론조사
기준 공표

- **선거여론조사기준**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준 결정** :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
- **적용 기한** : 별도 개정 없으면 계속 적용

03

선거여론
조사기관 등록

- **신청 대상** : 공표 · 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 · 단체
- **신청 방법** : 서면(직접방문, 우편 가능)
- **신청처** : 관할 심의위원회
- **등록신청 사항**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 **등록증 교부** :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 **변경등록 신청** : 등록신청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요건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

04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 **신고의무자**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상시)
- **신고 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 방법** : 서면(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팩스, 우편 가능)
- **신고처** : 관할 심의위원회
- **신고 내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 일시 ·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05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 **요청자** : 선거여론조사기관(상시)
- **기 한** : 여론조사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 **방 법** : 서면(홈페이지)
- **제출처** : 관할 심의위원회(경유)
- **비용 납부** : 선거여론조사기관
- **가상번호 제공**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현황' 게시판
- **휴대전화 가상번호 반납 및 폐기**

06
**선거여론
조사실시**

- **여론조사 실시 유의사항**
 - ▶ 일반적 준수사항
 - ⇒ 객관성 · 신뢰성 유지
 - ⇒ 표본의 대표성 확보
 - ⇒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방법 · 분석방법 금지
 - ▶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함.
 - ⇒ '지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없음' 응답항목 별도 구성
 - ⇒ 정당명·후보자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
- **조사대상자 권리보호** :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 ·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함.

07
**선거여론
조사결과
홈페이지 등록**

- **등록의무자** :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
-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 등록의무자에게 사전 통보** : 여론조사 의뢰자
- **등록 내용** : 표본의 크기 · 조사방법 · 피조사자선정 · 전체 질문지 · 결과분석 등 기준으로 정한 사항
- **등록 방법**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구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08

성실 응답자
전화요금
할인 혜택

- **대상** :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응답 도중 이탈자 제외)
- **고지** :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제공가액** : 1회 응답시 1천원 범위 내 전화요금
- **제공방법** :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함.
- **비용부담** :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의뢰하는 경우는 의뢰자)

09

선거여론조사
심의

여론조사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 **신청자** : 신고내용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 서면, 증빙자료 첨부(가능)
- **신청처** : 관할 심의위원회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 **신청방법** : 서면, 증빙자료 첨부(필수)
- **신청처** : 관할 심의위원회

모니터링에 따른 심의

- 선거여론조사의 위법 여부 검토
-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

10

선거여론
조사범죄
조사·조치

- **조사 대상** :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
- **조사권** : 장소출입 및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 증거 물품수거권, 현장조치권
- **조치**
 -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경고 등
 -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불이행 시 고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제 2 장

선거여론조사기준

1.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의미
2.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3.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적용대상 등
4.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시 처벌

제2장 | 선거여론조사기준

01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의미

- “선거여론조사기준”이란 중앙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함)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한 것을 말함(법 § 8의8⑥).
- 누구든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등록 또는 공표·보도할 때에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법 § 108⑥~⑧).

02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 중앙심의위원회가 기준을 제정·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함(운영규칙 § 18).

03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적용대상 등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 다른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에 적용됨(기준 § 3).
-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적용함(기준 § 3).

04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시 처벌

- 📍 심의위원회는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 § 8의8⑩).
- 📍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등 필요할 조치를 하며(법 § 8의8),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 261②).
-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법 § 108⑥).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 261②)
-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해당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함(법 § 108⑦).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 261②)
- 📍 누구든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법 § 108⑧1).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 261②)
- 📍 누구든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 108⑧2).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 261②)

제 3 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1. 개요
2. 등록 신청
3. 선거여론조사기관 정보 공개
4. 변경 등록신청
5. 등록 취소
6. 등록 관련 위반시 처벌
7.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조사
 - 첨부 1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 첨부 2 :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첨부 3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제3장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01 개요

-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는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에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함(법 § 8의9①).
- ▶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법 § 108②).

02 등록 신청

가 대상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

나 시기 : 상시

다 신청처 :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

※ 중앙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함(규칙 §2의2②).

라 신청방법 : 서면(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첨부 1)

마 등록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 구비서류 : 구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②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상근 직원(등록신청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 필요)

-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관련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직접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거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직접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거나, 여론조사 직접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분석전문인력은 20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이 될 수 없음.

** 통계학·사회과학 등 여론조사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함.

☞ 구비서류 : 여론조사 관련 학위 졸업증명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경력(여론조사 실시 및 분석 분야에 한함)증명서, 최근 3개월간 납부한 4대 보험 증명서류

③ 연간 1억원 이상(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5천만원 이상) 여론조사 매출액

-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관련 매출액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④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 구비서류 : 소재지 약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사항 증명서 등

※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규칙 시행 당시(2023. 7. 31.) 기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위 등록요건을 갖추어야하되, 위 기한까지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강화된 요건(1억원)을 갖춘 것으로 간주

■ 바 등록신청서 보완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가 신고사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 지정한 보완 기간 내 보완하여야 함.

※ 보완 기간 내 보완이 없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은 반려됨.

■ 사 현지실사 및 등록증 교부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는 등록신청 요건을 심사한 후 현지 실사과정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요건을 충족한 여론조사기관·단체에 등록증을 교부함(법 § 8의9②, 규칙 § 2의2④).

※ 등록증을 교부받은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함(이하 같음).

03 선거여론조사기관 정보 공개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는 등록증이 발급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함(법 § 8의9③, 규칙 § 2의2⑤).

- ① 명칭
- ②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등록연월일

04 변경 등록신청

-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법 § 8의9④).
- ②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는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함(규칙 § 2의2⑦).
※ 변경등록 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공개사항을 수정하여 공개함.

05 등록 취소

- 가** 선거여론조사기관(대표자 및 구성원 포함)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됨(법 § 8의9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등록 신청 불가
- 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이 공개됨(규칙 § 2의2⑧).

06 등록 관련 위반시 처벌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신청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법 § 8의9④). ⇒ 변경등록신청을 제때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 261⑧)

07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함(규칙 § 2의2⑨).

- 정기점검 : 연 1회(관할 시·도 심의위원회)
- 수시점검 : 중앙 또는 관할 시·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첨부 1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
| 여론조사 기관·단체명 | | ■ 명 청 : ■ 설립일자 : | | | |
| 사무소 소재지 | | ■ 주소 : ■ 면적 : m ²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조사시스템 보유내역 | 시스템명 | | | | |
| | 사용회선수 | | | | |
| 상근직원현황 | ■ 분석전문인력 : 명 ■ 일반직원 : 명 | | | | |
|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기간) | 원 () | | | | |
|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 | | | |
| ※ 구비서류 | | | | | |
| 1. 조사시스템 보유 확인서류 부 2. 상근 직원 관련 증빙서류 부 3. 사무소 보유 증빙서류 부 4.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증빙서류 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 | | | | |
| 주: 1. “조사시스템 보유내역”은 시스템명과 사용회선수를 적고,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응답조사시스템 장비의 구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근 직원 관련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간 납부한 4대 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전문인력은 졸업증명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무소 보유 증빙서류”는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매출액”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여론조사의 매출액을 말하며, 그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첨부 2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구 분 | | 변경 내용 | | 변경일자 | 변경사유 |
|---------------|-------|----------------------------|------|------|------|
| 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 | | |
| 사무소 소재지 | | • 주소 : • 면적 : m^2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조사시스템 보유내역 | 시스템명 | | | | |
| | 사용회선수 | | | | |
| 상근직원현황 | | • 분석전문인력 : 명 • 일반직원 : 명 | | |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4항 및 『공직선관규칙』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조사시스템 보유 확인서류 1부.
- 상근직원 근무 증빙서류 1부.
- 사무소 보유 증명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 1. 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내용”은 기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있는 내용만 적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할 경우 제출합니다.

첨부 3

〈 앞면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1. 등록번호 제 호
2. 선거여론조사기관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
5. 등록연월일 년 월 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함.

년 월 일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뒷면 〉

1. 유의사항

- 이 등록증은 「공직선거법」제8조의9에 따라 발행한 것입니다.
- 이 등록증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폐업된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2. 등록증 재교부

| | |
|--------|-------|
| 재교부사유 | |
| 재교부일자 | 년 월 일 |
| 재교부담당자 | |

제4장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1. 신고대상
 2. 신고 제외대상
 3. 신고기한
 4. 신고방법
 5. 신고처
 6. 신고사항
 7. 실시 신고의 보완
 8. 선거비용 산입
 9. 실시 신고 위반 시 처벌
- 첨부 4 : 2023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 첨부 5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예시)
 - 첨부 6 : 중앙 및 시·도 심의위원회 연락처

제4장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01

신고대상

-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함(법 § 108③).
 - ※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3. 9. 26. 2003도2230 판결).
 - ※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 및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의 자질, 투표 예정 여부 등을 묻는 문항 등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공표 ·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의무가 없음(법 § 8의8⑧).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 · 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
-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02 신고 제외대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없음(법 § 108③).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 · 단체

→ 의뢰한 제3자(후보자 등)가 신고

※ 다만, 여론조사 기관 · 단체가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여론 조사 기관 · 단체가 신고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③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④ 전국 또는 시 · 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 “시 · 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라 결정함(기준 §20③).

※ 신고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구 · 시 · 군의 지역신문사는 신고 대상임.

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⑥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⑦ 위 ③~⑥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관리 · 운영”이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함.

⑧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 2023년도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 첨부 4 참조

03 신고기한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법 § 108③)

-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규칙 §48의 4②, 기준 §8③)
- ※ 신고서 접수는 국가직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가능하나,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함(법 §274).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2024. 3. 23. ~ 4. 10.

04 신고방법

서면(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함(법 § 108③, 규칙 § 48의4②).

- ※ 신고서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음.
- ※ 여론조사기관 · 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행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 상 책임은 신고의무자에게 있음.
-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식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자료실

05 신고처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심의위원회에 하여야 함(법 § 108③, 규칙 § 48의4①).

- ①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 · 도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② 관할 시 · 도심의위원회 : 하나의 시 · 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06 신고사항

가 일반사항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할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규칙 § 48의4②, 기준 § 8①).

- ①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② 조사기관 · 단체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기관 · 단체명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관할 심의위원회 등록 여부에 따라 조사기관 · 단체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선택

③ 조사목적

④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공표 · 보도 여부, 기타)

⑤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함)

나 조사목적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적어야 함(규칙 § 48의4②, 기준 § 9①).

다 조사지역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적어야 함(규칙 § 48의4②, 기준 § 9②).

라 조사일시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적어야 하며,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어야 함(규칙 § 48의4②, 기준 § 9③).

마 조사방법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아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함(규칙 § 48의4②, 기준 § 10).

① 직접(대인)면접조사

②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 · 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

③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 · 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

④ 우편조사

⑤ 표적집단면접조사

- ⑥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survey) 등으로 구분]
- ⑦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 ⑧ 그 밖의 조사방법

바 표본의 크기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적어야 함(규칙 § 48의4②, 기준 § 2, 11①).

사 피조사자 선정방법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함. 이 경우 전화면접조사 · 전화자동응답(ARS)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DB 포함. 이하 같음)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야 함(규칙 § 48의4②, 기준 § 11②).

- ① 전화면접조사 · 전화자동응답(ARS)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적어야 함.
- ②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적어야 함.
 -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 ·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은 사용할 수 없음(기준 §4④).
 - ※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기준 §4⑤).

아 공표 · 보도 여부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언론기관 등을 통해 공표 · 보도하는지 여부를 적어야 함. (규칙 § 48의4②, 기준 § 8① 후단)

자 기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의 명칭을 적어야 함.(규칙 § 48의4②, 기준 § 8②)

07 실시 신고의 보완

- 관할 심의위원회가 신고사항이 법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하여야 함(법 § 108④ 전단).
-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운영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법 § 108④ 후단, 운영규칙 § 19①).
-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심의위원회에 하여야 함(법 § 8의8⑨).
 - ①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② 관할 시 · 도심의위원회 : 해당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08 선거비용 산입

- 대상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산입시기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 횟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51의2③).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 261③).

- 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 ②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 ③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할 때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할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첨부 4

공고 2023-1호

2023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1. 대상 : '22. 10.~12.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닐슨미디어코리아, 마켓링크)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29개 인터넷언론사

| 구분 | 명칭 | 사이트 URL | 구분 | 명칭 | 사이트 URL |
|----|-----------|-----------------------|----|----------|-------------------------|
| 1 | 네이버 | naver.com | 16 | 스포티비뉴스 | m.spoon.spotvnews.co.kr |
| 2 | 다음 | daum.net | 17 | 엑스포츠뉴스 | m.xportsnews.com |
| 3 | 엠에스엔 | msn.com | 18 | 오마이뉴스 | m.ohmynews.com |
| 4 | 네이트 | nate.com | 19 | 위키트리 | m.wikitre.co.kr |
| 5 | 줌 | zum.com | 20 | 인사이트 | insight.co.kr |
| 6 | MHNSports | m.winternewskorea.com | 21 | 제주교통복지신문 | jejutwn.com |
| 7 | stn스포츠 | stnsports.co.kr | 22 | 지디넷코리아 | m.zdnet.co.kr |
| 8 | 뉴데일리 | biz.newdaily.co.kr | 23 | 컨슈머타임스 | cstimes.com |
| 9 | 뉴스엔 | m.newsen.com | 24 | 코메디닷컴 | kormedi.com |
| 10 | 뉴스타파 | newstapa.org | 25 | 톱스타뉴스 | topstarnews.net |
| 11 | 뉴스픽 | m.newspic.kr | 26 | 티빙 | tving.com |
| 12 | 데일리안 | dailian.co.kr | 27 | 포모스 | fomos.kr |
| 13 | 디지털데일리 | ddaily.co.kr | 28 | 풋볼리스트 | footballist.co.kr |
| 14 | 마이데일리 | m.mydaily.co.kr | 29 | 하이닥 | hidoc.co.kr |
| 15 | 블로터 | asadal,bloter.net | | | |

4. 적용기간 : 2023. 2. 1. ~ 2024. 1. 31.

2023. 1. 2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2024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는 2024년 1월중 결정·공고

첨부 5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예시)

1. 신고인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공직선거법상 신분 |
|-----|-------------|--------------------|-------------|-----------|
| 홍길동 | 1900년 0월 0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 | 02) 00-0000 | 예비후보자 |

2. (조사기관 · 단체) · (선거여론조사기관)

- 가. (조사기관 · 단체명) · (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리서치
나. 대표자 성명 : □ □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서울시 강남구 ○○로 ○ (전화번호 : 02-△△△△-△△△△△△)

3. 조사 목적 : ○○선거(○○선거구명) 예비후보자 지지도 조사

4. 조사 방법 등

| 조사지역 | 조사일시 | 표본의 크기 | 조사방법 | 피조사자 선정방법 | 공표 · 보도 여부 | 기타 |
|------|--------------------------|--------|------------------------------|--|------------|----|
| 전국 | 2000.0.0. 10:00~21:00 | 1,000명 | 전화면접조사 (유 · 무선 병행) |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 • RDD(유선, 무선위 추출) • 휴대전화 가상번호(무선) | 여, 부 | |
| | 2000.0.0. 15:00~20:00 | | 전화자동응답(ARS) 조사(유 · 무선 병행) | • 자체구축 패널 • 전체 규모 : 15만명 • 구축방법 : 자사 온라인 회원가입 | | |

5. 전체 설문내용 : 별지 첨부

2000년 0월 0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0년 0월 00일
신고인 ○ ○ ○ ①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주 : 1. 여론조사 기관 ·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 · 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 · 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 · 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2. (조사기관 · 단체) ·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5. “3. 조사목적”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 또는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적되,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은 적지 아니합니다.
6. “4. 조사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적습니다.
- 나.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적고,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 다. “표본의 크기”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적어야 합니다.
- 라.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 · 무선전화 병행 등), 전화자동응답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 · 무선전화 병행 등)등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마.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적어야 하며, 특정 표본추출틀(DB, 패널 포함)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 바. “기타”란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집단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7.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 6

중앙 및 시·도심의위원회 연락처

| 위원회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비고 |
|------|----------------------------|---------------|--|----|
| 중앙 | (02)504-0342,3 | 0505-058-1175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남현동) | |
| 서울 | (02)744-1390 765-5421,2 | 0505-058-21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4층(와룡동) | |
| 부산 | (051)851-7774 862-1390 | 0505-058-220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연산2동) | |
| 대구 | (053)763-1390 764-4335 | 0505-058-2305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6(중리동) | |
| 인천 | (032)588-4361 588-4350 | 0505-058-24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
| 광주 | (062)382-5384 382-4773 | 0505-058-2505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8(치평동) | |
| 대전 | (042)610-3935 610-3939 | 0505-058-2605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2동) 나리기움대전센터 7층, 8층 | |
| 울산 | (052)290-0730,1 | 0505-058-2705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1(학성동) | |
| 세종 | (044)862-1390 868-1390 | 0505-058-2805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6(보람동) | |
| 경기 | (031)259-4839, 4876 | 0505-058-290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31(영통동) | |
| 강원 | (033)244-4355 251-4413 | 0505-058-3005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장학리) | |
| 충북 | (043)237-3939 237-1390 | 0505-058-3105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08(비하동) | |
| 충남 | (041)406-2050 406-2062 | 0505-058-3205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45(신경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4층, 5층 | |
| 전북 | (063)239-2330 239-2340 | 0505-058-3305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9(효자동2가) | |
| 전남 | (061)245-1390 288-8129 | 0505-058-3405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남악리) | |
| 경북 | (054)650-1775,6 | 0505-058-3505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1길 5(금능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5층, 6층 | |
| 경남 | (055)212-0730 212-0735 | 0505-058-3605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용호동) | |
| 제주 | (064)723-3939 723-1390 | 0505-058-370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06(이도2동) |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www.nesdc.go.kr

제 5 장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1. 개념
2. 제공 요청
3. 요청서의 보완요구 등
4. 요청서 송부
5. 가상번호 수 조정
6. 비용부담 및 납부
7. 제공
8. 제공사실 등 고지
9. 제공 거부의사 표시
10. 반납 및 폐기
11. 생성 · 제공 관련 위반 시 처벌
 - 첨부 7 :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
 - 첨부 8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 첨부 9 :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제5장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처리 흐름도

제공 요청서 제출
【선거여론조사기관】

- 선거여론조사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 (경유)

제공 요청서 심사
【관할 심의위원회】

- 제출기한, 기재사항, 30배 초과 등

▶

이동통신사업자에
요청서 송부
【관할 심의위원회】

-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제공사실 및
제공거부 고지
【이동통신사업자】

- 아래의 방법 중 2이상의 방법으로 고지
 -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 포함)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우편물 발송
- ※ 임기만료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 대상

▶

제공 거부
【이용자】

- 고지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까지
-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의사 표시

▶

가상번호 생성
【이동통신사】

- 가상번호 유효기간 설정(요청서에 기재된 여론조사기간)
- 거부의사 이용자 제외

▶

비용 납부
【선거여론조사기관】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받기 전까지

▶

가상번호 제공
【이동통신사업자】
(비용수령 후)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현황' 게시판을 통해 제공
-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및 폐기
【선거여론조사기관】

- 여론조사 실시
- 유효기간 경과된 가상번호 즉시 폐기

01 개념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예) 050-×××-×××]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응답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지역별·성별·연령대별로 대표성을 확보하여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2016년 당내경선 등에 최초 도입됨.

02 제공 요청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법 § 108의2①).

가 요청권자 : 선거여론조사기관

나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 제출
(법 § 108의2③, 규칙 § 48의5①)

※ 요청서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등록마당 –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출처 : 관할 심의위원회(규칙 § 48의5②)

라 요청기한 :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 요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하

마 요청서 기재사항

① 선거명(선거구명) 및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②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기간

※ 실제 가상번호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기간을 기재(최소 2일 이상 ~ 최대 10일 이하)

③ 여론조사 대상자 수

* 전체 목표 표본 수 중 가상번호를 사용하여 조사할 목표 표본 수

▣ 여론조사 등록정보

안내문 기존가상번호요청 불러오기

| | | |
|--------------|---|----------------------------------|
| 선거구분 | :: 선거구분 선택 :: | |
| 선거명 | :: 선거명 선택 :: | |
| 여론조사목적 · 내용 | | |
| 여론조사 대상지역 | :: 대상지역 선택 :: | |
| 여론조사기간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여 조사할 기간을 입력합니다. |
| 여론조사 대상자 수 | <input type="text"/> 명 ※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여 조사할 대상자 수를 입력합니다. | |
| 가상번호 사용 대상자수 | 0 명 ※ 여론조사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④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이동통신사별, 성별 · 연령대별 · 지역별)

* 제공 요청가능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

| | | |
|---------------|--------------|--------|
| :: 광역시도 선택 :: | :: 시군구 선택 :: | + 지역추가 |
| 경기도 | 과천시 | 삭제 |
| 경기도 | 의왕시 | 삭제 |

* 지역을 선택하신 후 추가하시면 하단의 통신사별 목록에 공통으로 표시됩니다.(삭제도 동일)



| 연령별 | | 합계 | 20대 (18세~19 세 포함)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
| 지역별 | 성별 | | | | | | | |
| 합계 | 남 | 6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여 | 6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계 | 1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 과천시 전체 | 남 | 300 | 50 | 50 | 50 | 50 | 50 | 50 |
| | 여 | 300 | 50 | 50 | 50 | 50 | 50 | 50 |
| | 계 | 6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의왕시 전체 | 남 | 300 | 50 | 50 | 50 | 50 | 50 | 50 |
| | 여 | 300 | 50 | 50 | 50 | 50 | 50 | 50 |
| | 계 | 6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⑤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항

※ 여론조사의 목적·일정, 조사의뢰자, 조사방법 비율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계획 개요, 설문요지 등 여론조사 관련 자료 첨부

▣ 선거여론조사 개요 파일

파일
[파일첨부]
파일찾기
|0|btye

※ 여론조사의 목적·일정, 여론조사 설문요지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관련 자료 첨부

03 요청서의 보완요구 등

관할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요청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 § 108의2⑤).

※ 요청서 보완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음.

04 요청서 송부

관할 심의위원회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 송부함(법 § 108의2③).

※ 요청서의 보완이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날을 제출받은 날로 봄.

※ 요청서 송부 후 취소·변경 불가

05 가상번호 수 조정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해야 하는 수보다 적은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법 § 108의2⑤).

-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 조정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심의위원회에 통보
- ② 이동통신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할 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통보
- ③ 부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다른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기를 희망할 경우, 관할 심의위원회는 해당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제공 가능여부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재통보

06 비용부담 및 납부

가 주 체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법 § 108의2⑤, 규칙 § 48의5③).

나 시 기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법 § 108의2⑤, 규칙 § 48의5③).

다 비 용 : 358.6원(부가가치세 포함, 2023년 기준)

※ 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20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일할계산함(1일 1건 17,93원).

※ 매년 산정된 비용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라 방 법 : 해당 이동통신사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

※ 이동통신사업자는 비용 · 납부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07

제공

가 주 체 : 이동통신사업자

※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생성

나 기 한 : 관할 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 제공정보

① 성별 : 남성 또는 여성

② 연령: 20대(18세 및 19세 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③ 거주지역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시 · 도 단위
-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 : 자치구 · 시 · 군 단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 : 선거구 또는 자치구 · 시 · 군 또는 읍·면·동 단위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선거구 또는 읍·면·동 단위

라 제공방법

① 유효기간 설정 : 요청서에 기재된 여론조사기간(10일 초과 금지)

② 관할 심의위원회[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마당 –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현황’ 게시판)]를 경유하여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

※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표지[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를 관할 심의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

※ 중앙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암호화된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이동통신사업자간 상호 동의에 따라 전산망(전자메일) 등
제공가능

③ (이동통신사)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등록마당-이통사 가상번호 등록)에서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신청한 게시목록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파일 업로드

▣ 이통사 가상번호 등록

□ 가상번호 요청 불리오기

| | |
|-----------------------------------|--|
| 담당자 | <input type="text"/> |
| 통신사코드 | LGU+ |
| 관리번호 | <input type="text"/> |
| 선거명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요청일자 | 2023-09-11 |
| 요청기관명 | <input type="text"/> |
| 제공기간 | 2023-09-22 ~ 2023-09-23 |
| 세금계산서 파일업로드 | <input type="file"/> [0]byte |
| 가상번호 파일업로드 | <input type="file"/> [0]byte |
| 가상번호 요청내역과 제공내역의 동일여부 | <input checked="" type="radio"/> 동일하다. <input type="radio"/> 동일하지않다. |
| <input type="button" value="등록"/> | |

④ (선거여론조사기관) 해당 게시목록에 업로드된 이동통신사별 파일 다운로드

| 관리번호/문서번호 | 관할 | 신청일자 | 선거명 | 여론조사기간 | 진행상태 | 수정상태 | 다운로드 | 사용여부 |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전국 | 2023-10-18 | 정기(정례)조사 | 2023-11-17 ~ 2023-11-18 | 업로드완료 | 수정불가 | | 사용가능 |

08 제공사실 등 고지

■ **가 주 체** : 이동통신사업자

■ **나 대 상**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해당 이동통신사 이용자

■ **다 고지기간**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라 고지방법** : 다음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

- ①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 포함) 게시
- ② 전자우편 전송
- ③ 우편물 발송

09 제공 거부의사 표시

■ **가 시 기** : 고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

■ **나 방 법**

- 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
- ② 거부의사 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 ③ 가상번호 제공 후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후 가상번호 생성 시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단, 불가피한 경우 예외)

10 반납 및 폐기

가 반 납

① 주 체 : 선거여론조사기관

② 방 법

- ▶ 휴대전화 가상번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반납할 수 있음(법 § 108의2⑤, 규칙 § 48의5③).
- ▶ 반납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모두를 반납하여야 함.
※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납하는 경우라도 기 납부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음.

나 폐 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 포함)은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함(법 § 108의2⑤).

11 생성 · 제공 관련 위반 시 처벌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6①).

- ①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 · 연령 · 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
- ②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행위
- ③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행위
- ④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행위

- 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행위
- ⑥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 한 행위

◆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관련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6③).

- ①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행위
- ②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행위
- ③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한 행위

첨부 7

공고 제2022-2호

2023년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의5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통보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이동통신사업자명 |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 비고 |
|------------|--------------|---|
| 주식회사 케이티 | 326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 20일 기준• 부가세 별도• 문자메시지 발송 미지원• 적용기간 : 2023. 1. 1.~12. 31. (여론조사 개시일 기준) <p>※ 1건 1일 기준 17.93원(부가세 포함)</p> |
| LG유플러스 | 326원 | |
| SK텔레콤 주식회사 | 326원 | |

2022년 12월 1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2024년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은 2023년 12월말 공고

첨부 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수신 : ○○이동통신사

경유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사용할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선거명(선거구명) 및 여론조사의 목적 · 내용 :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
3. 여론조사 기간 :
4. 여론조사 대상자 수 :
5.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

| 연령별 · 성별 지역별 | 합 계 |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70대이상 | | 비 고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휴대전화 가상번호 담당자(※ 정당의 당내경선 · 정당활동 의견수렴의 경우 별도서식 사용)

| 직 위 | 성 명 | 휴대전화번호(이메일) | 비 고 |
|-----|-----|-------------|-----|
| | | | |
| | | | |

붙임 : 여론조사 관련 자료 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선거여론조사기관 대 표 자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

- 주 1. “여론조사 대상 지역”은 시·도, 자치구·시·군, 읍·면·동 또는 선거구 적으며, 각각 별자로 작성할 수 있다.
2.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이동통신사별로 작성하되,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 대상자 수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연령별 · 성별”의 ‘20대’ 칸에는 18세 및 19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지역별”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시 · 도 단위
 - 나.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 : 자치구 · 시 · 군 단위
 -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 : 선거구 또는 자치구 · 시 · 군 또는 읍·면·동 단위
 -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선거구 또는 읍·면·동 단위
5. “여론조사 관련 자료”는 여론조사의 목적 · 일정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계획 개요, 여론조사 설문요지 등을 말한다.

첨부 9

〈표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수신 : ○○선거여론조사기관명

경유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2제2항에 따라 귀 선거여론조사기관에서 요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1. 작성일 : 년 월 일

2. 유효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3.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방법 :

4.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내역

| 연령별 · 성별 | 합 계 |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70대 이상 | | 비 고 | |
|-------------|-----|---|-----|---|-----|---|-----|---|-----|---|-----|---|--------|---|--------|---|
| | 지역별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동통신사 (인)

주: “20대”칸에는 18세 및 19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내지〉

| 일련번호 | 연령대 | 성별 | 거주지역 | 휴대전화 가상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작성 방법

가. “일련번호”는 연령대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연령대, 성(性)별, 거주지역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개인정보에 따른다.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에 따른다.

다. “거주지역”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에 따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요청한 지역별 단위에 따라 작성한다.

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번호 사이에 “-” 표시를 기재하지 않는다.

2.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작성 시 위칸과 동일내용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3.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는 이동통신사에서 전자적 파일로 제공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www.nesdc.go.kr

제 6 장

선거여론조사 실시

1. 일반적 준수사항
2. 시기별 유의사항
3.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4.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5.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6. 성실 응답자 전화요금 할인 혜택
7.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및 제출
8. 선거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위반 시 처벌

제 6 장 | 선거여론조사 실시

01 일반적 준수사항

- 가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기준 § 4①).
- 나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법 § 108⑤, 기준 § 4②).
- 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기준 § 4③).
- 라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기준 § 4④).
- 마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기준 § 4⑤).
- 바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아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할 수 없음(기준 § 4⑥).
※ 과다한 표본의 조사를 제한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①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함)대상 여론조사에 한정함] 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 ②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 · 시 · 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함) 또는 시 · 도단위 조사 : 800명
 -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 · 시 · 군단위 조사 : 500명
 -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조사 : 300명
- ※ 2 이상의 여론조사를 동시 실시하면서 각 조사결과를 모두 공표 · 보도하는 경우, 각 조사의 최소 표본크기 및 기준값 배율 범위를 충족해야 함.

- 사**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에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 108②, 기준 § 4⑦).
- 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기준 § 4⑧).
- 자**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기준 § 4⑨).
- 차**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70 이상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함(기준 § 4⑩).
- 카**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법 § 108⑪).

02 시기별 유의사항

- 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 · 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법 § 108②).

※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 · 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할 수 있음(법 §108② 단서).

나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법 § 108①).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법 §167②).

03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가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됨(법 § 108⑤, 기준 § 6①).

-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③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 · 정견 · 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 ④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 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나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함(기준 § 6②).

* 선거여론조사의 질문 항목 구성 시 ‘없음’ 항목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유권자로 하여금 차선의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 적합도, 선호도 등에는 호감도, 비호감도 등이 포함됨.

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기준 § 6③).

* 응답항목의 순서를 응답자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여 초두효과 등 편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라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함(기준 § 6④).

04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 108⑪).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자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행위

05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가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함(법 § 108⑤, 기준 § 7①).

- **나**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기준 § 7②).
- **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 108⑤4, 기준 § 7③).

06

성실 응답자 전화요금 할인 혜택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법 § 108⑬, 규칙 § 48의4④).

가 대 상 :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

※ 응답 도중 이탈한 경우에는 제외

나 고 지 :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다 제공가액 : 1회 응답시 1천원 범위 내

라 제공방법 :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마 비용부담 :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

※ 해당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본인, 여론조사기관 ·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 의뢰자가 부담함.

07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및 제출

가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법 § 108⑥).

※ 녹음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5도7354).

나 선거여론조사 자료 제출의무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법 § 108⑨1).
- 관할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법 § 108⑨2).
 - ①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때
 - ② 선거여론조사가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08 선거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위반 시 처벌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6①5).

- ① 질문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 한 행위

-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③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④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성실응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 ⑤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⑥ 선거여론조사 자료 제출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
- ⑦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
- ⑧ 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한 행위

■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6③).

- ①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행위
- ②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 · 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한 행위
- ③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한 행위
- ④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 한 행위
- 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 위 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기준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 261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www.nesdc.go.kr

제 7 장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1. 등록 대상 여론조사
2. 등록의무자
3. 등록사항
4. 등록방법
5. 등록 자료의 대외 공개
6.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 관련 위반 시 처벌
 - 첨부 10-1 : 선거여론조사 결과 기본자료 등록(예시)
 - 첨부 10-2 : 이메일조사 피조사자 접촉현황 분류(예시)
 스마트폰 앱조사 피조사자 접촉현황 분류(예시)
 - 첨부 11 : 결과분석 자료(예시)

제 7 장 |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01 등록 대상 여론조사

가 선거여론조사로서 공표 · 보도하려는 선거여론조사(법 §108⑦)

※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에 기재된 공표 · 보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로 공표 · 보도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함.

나 다음의 경우는 비등록 대상임.

- ①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나 그 결과를 공표 · 보도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
 - ▶ 정당이 당내경선결과 발표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장소 등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 ② 법 제8조의8제8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 보도하려는 경우
 - ▶ 정당이 대표자 등 당직자 선출을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 보도하려는 경우
 -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 · 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 보도하려는 경우

※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 다만, 학술·연구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여론조사 내용 중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별도로 공표하는 등의 경우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단체 등이 지지·반대할 후보자 또는 정당을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경우

02 등록의무자

위 ①-가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법 § 108⑦)

※ 관할 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로서 실제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을 말함.

03 등록사항

가) 여론조사결과 등록 시 유의사항

선거여론조사를 등록한다는 것은 공표·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법 § 108⑦·⑧, 기준 § 4⑥, § 5).

①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기준 § 4⑥)

- ▶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시·도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함) 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 ▶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함) 또는 시·도단위 조사 : 800명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단위 조사 : 500명
-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조사 : 300명

② 가중값 배율 범위(기준 § 5, 「별지 제2호 서식」)

▶ 성 별 : 0.7 ~ 1.5

▶ 연령대별 : 0.7 ~ 1.5

▶ 지 역 별 : 0.7 ~ 1.5

※ 가중값 배율은 산출된 값 그대로를 의미하며, 올림·버림·반올림하지 아니 함.

※ 다만, 최소 표본의 크기 및 가중값 배율의 범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함.

나 여론조사결과 등록사항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 기준에서 정한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함(법 § 108⑦, 기준 § 12).

①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② 조사의뢰자

③ 선거여론조사기관

④ 조사지역

⑤ 조사일시

⑥ 조사대상

⑦ 조사방법

⑧ 표본의 크기

⑨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⑩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

⑪ 접촉률

⑫ 응답률

⑬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⑭ 표본오차

⑮ 전체 질문지

⑯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아니 됨.

04 등록방법

가) 등록방식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기준 § 13①).

나)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함(기준 § 16).

※ 2 이상의 여론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해당 선거명을 모두 선택(기재)

The screenshot shows a registration form for election surveys. It includes sections for 'Survey Name' (여론조사의 명칭), 'Region' (지역), and 'Election Name' (선거명). The 'Region' section has dropdown menus for selecting a district or province and a 'Plus Add' button (+ 추가). The 'Election Name' section has three dropdown menus for selecting election names and a note indicating that if none are selected, it is considered a non-vote.

| | | | |
|-------------|---|--|-----------|
| 여론조사의 명칭 | 선거구분 | :: 선거구분 선택 :: | |
| | 지역 | :: 광역시도 선택 :: | 전체 |
| | | ※ 2 이상의 시 · 도를 함께 조사할 경우 “추가”를 눌러 지역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1개의 시 · 도에서 여러 시/군/구를 조사할 경우 “추가”를 눌러 지역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하위 시/군/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전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 선거명 | :: 선거명 :: | :: 선거명 :: | :: 선거명 :: |
| | ※ 앞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 정책지지도 조사 등을 하였을 경우 기입합니다. | | |

다) 조사의뢰자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의뢰자인 경우 해당 의뢰자 모두 등록하여야 함.

The screenshot shows a registration form for survey requesters. It includes a section for 'Survey Requester' (조사의뢰자) with a dropdown menu for selecting the requester and a 'Plus Add' button (+ 추가).

| | |
|-------|----------------|
| 조사의뢰자 | :: 조사의뢰자 선택 :: |
|-------|----------------|

예) ○○일보, ○○방송, 총길도(일본언어에 한글)

※ 정당 · 후보자가 의뢰(실시)한 경우 공표 · 보도 불가

예) 공동의뢰인 경우 → 우측에 추가버튼 활용하여 등록

라 선거여론조사기관명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칭을 모두 등록하여야 함.

여심위리서치

조사기관명

※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 모두 입력

※ 회원가입 시 등록한 명칭이 자동 반영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명을 모두 입력하여야 함.

마 조사지역

①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17개 시·도 중 선택)을 등록하여야 함(기준 § 16).

:: 광역시도 선택 ::

전체

+ 추가

지역

※ 2 이상의 시·도를 함께 조사할 경우 "추가"를 눌러 지역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1개의 시·도에서 여러 시/군/구를 조사할 경우 "추가"를 눌러 지역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하위 시/군/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전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초구 가' 조사의 경우 → '서울' 선택 후 우측에 '서초구' 선택 후 수기입력란에 '가' 입력

예) '과천시 의왕시' 조사의 경우 → '경기' 선택 후 우측에 '과천시' 선택 후 추가버튼 활용하여 '의왕시' 선택

② 2 이상의 시·도를 함께 조사한 경우 해당 시·도를 **+ 추가**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함.

예) 서울 · 경기 · 인천 조사의 경우 → '누가' 버튼을 활용하여 3개 시·도 각각 선택(전국으로 자동 분류)

예) 17개 시·도 전체 조사의 경우 → '전국' 선택

바 조사일시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등록하여야 하며,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함(기준 § 16).

사 조사대상

① 조사대상에는 전체 조사대상을 등록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된 조사인 경우 각 조사방법별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등록함.

| | |
|------------------------------|--|
| 조사대상 | |
| ※ 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 |

②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 등을 등록함.

예) 유선전화면접 : ○○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유권자

무선전화면접 : ○○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0세 미만 유권자

아 표본의 크기

① 표본의 크기는 조사완료 사례수를 말하며, 성별·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 합계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같아야 함.

② 조사완료 사례수(실제 조사된 표본의 크기)와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조사완료 사례수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의 구성비율에 따라 비례할당한 사례수)를 각각 연령대별, 성별 및 지역별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등록하여야 함(기준 § 13②).

| | 구분 | | 조사완료 사례수(경) | 가중값 적용 적용 사례수(경) |
|-----------|------|--------|-------------|------------------|
| | 전체 | | | |
| 표본의 크기 | 성별 | 남 | | |
| | | 여 | | |
| | 연령대별 | 18~29세 | | |
| | | 30대 | | |
| | | 18~39세 | 안내글 | |
| | | 40대 | | |
| | | 50대 | | |
| | 지역별 | 60세 이상 | 안내글 | |
| | | 60대 | | |
| | | 70세 이상 | | |
| + 추가 | | | | |

* 연령대의 구분은 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되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의 경우 30대 이하를 하나의 연령대로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지역의 연령대별 구성비율 상 70대 이상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하여 조사·등록하여야 하고,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음.

자 조사방법

기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ARS 등)과 각 조사방법별 표본 구성비(유선전화면접 ○○%, 무선전화면접 ○○%) 등을 등록함.

The screenshot shows a user interface for managing survey methods. At the top left is a dropdown menu labeled "조사방법1" with a delete icon. On the right is a red "+ 추가" button. Below this is a table with two columns. The first column contains a list of methods: "조사방법 1" (with a circled '1'), "조사방법 2", "조사방법 3", and "조사방법 4". The second column contains dropdown menus for "선택하세요" and a percentage field "%".

차 피조사자 선정방법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등록방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기준 § 16, 첨부10 참조).

The screenshot shows a detailed configuration screen for respondent selection methods. It includes sections for "조사대상" (Survey Target), "표본 추출률" (Sampling Rate), "구조방법" (Sampling Method), and "표본추출방법" (Sampling Method). The "구조방법" section contains two notes: one about RDD sampling (500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 and another about sampling from a list of subscribers (SK(2000), KT(1500), LGU+(1000)). The "표본추출방법" section includes a dropdown menu and an "안내글" (Instructional Note) button. The "기타" (Other) section also has an "안내글" button.

- ① 표본추출률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률, 즉,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체 유권자 대상 무작위전화걸기(RDD), 유·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체구축 DB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등을 포함해 표본추출틀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등록함.

※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된 조사인 경우 각 조사방법별로 사용된 표본추출틀을 구분하여 등록함.

예) 유선전화면접 RDD조사 : (추출틀) 유선전화번호 RDD - (규모) 320,000 - (구축방법) 32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추출

예) 자체구축 패널 이용 인터넷조사 : (추출틀) 전자우편주소 자체구축패널 - (규모) 10,000 - (구축방법) 온라인 회원가입 등 모집

②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추출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용 비율을 등록하여야 함.

예) 무선전화면접 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 : (추출틀) 무선전화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40%) - (규모) 25,000 - (구축방법) SK(15,000개), KT(5,000개), LGU+(5,000개) 가입자 리스트로부터 무작위 추출

③ 조사대상 추출틀은 특정 DB(자체 구축 DB, 구매 DB) 또는 패널(자체 구축 패널, 구매 패널)을 추출틀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추출틀의 규모와 성별 · 연령대별 · 지역별 구성 비율을 등록하여야 하며,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등록할 수 있음.

④ 표본추출 방법은 “RDD, 패널에서 무작위 추출, DB에서 무작위 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등록함.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된 조사인 경우 각 조사방법 별로 적용된 표본추출 방법을 구분하여 등록함.

예) 유선(무선) 전화면접 : RDD

무선 ARS 휴대전화 가상번호 : 통신사 제공

인터넷조사 자체구축 패널 : 패널에서 무작위 추출

⑤ 실시한 조사방법별의 유·무선 응답비율을 각각 합산하여 ‘전체 유무선 비율’에 등록함.

카 피조사자 접촉 현황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의 접촉현황을 아래의 범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함.

| 피조사자 접촉현황 | | |
|--------------------------------------|--|-----|
| 사용규모 ※ 조사방법당 총 사용한 규모 기입 (합계와 동일) | | |
| 비적격 사례수 | 결번(OS) (조사시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 | |
| | 그 외의 비적격 사례수(NE) (사업체번호/팩스/대상지역아님/할당초과 등) | |
| 접촉실패 사례수(U) (통화중/부재중/접촉안됨) | | |
| 접촉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수 (R) | | |
| 접촉 후 응답완료 사례수 (I) | | |
| 합계 | | 0 |
| 접촉률 $(I/(I+R))/(I/(I+R+eU))$ | | 0 % |
| 응답률 $(I/(I+R))$ | | 0 % |

① 비적격 사례 : 사례(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

- 결번 : 조사시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

※ RDD로 추출한 번호에서 사전유효성검증을 통해 결번을 미리 걸러내고 조사를 진행하였더라도 걸러낸 번호수를 결번수에 포함시켜 등록

- 결번 외 :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할당 초과 등

② 접촉실패 사례 : 통화중, 부재중, 접촉안됨

③ 접촉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

④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

※ 스마트폰앱조사 및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웹조사 포함)인 경우 첨부10을 참조하여 구분

타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① (기본가중)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등록하여야 함.

② (추가가중)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①의 기본가중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기본가중과 추가가중한 결과분석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함.

※ 이 경우 공표·보도 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함(기준 §18②).

| | | | | |
|---------------|---|--|------------------------------------|----------------------|
|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기본가중 | 산출방법 | <input type="text"/> | |
| | | ※ 예)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 | |
| | 추가가중 | 적용방법 | :: 선택하세요 :: <input type="button"/> | <input type="text"/> |
| | | 산출방법 | <input type="text"/> | |
| | ※ 예) 응답유보층 판별분석 및 중앙선관위 제공 해당 선거구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기준 가중값 부여 | | | |
| | 적용방법 | :: 선택하세요 :: <input type="button"/> | <input type="text"/> | |

파 전체 질문지와 결과분석 자료

① 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는 PDF로 변환하여 등록하여야 함.

| | | |
|---------|--|--|
| 첨부파일 | 동의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질문지(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분석자료(필수) |
| | ※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동의체크를 해야 파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내문 내용대로 파일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전체질문지 | <input type="button"/> 파일찾기 [0]byte |
| 결과분석 자료 | <input type="button"/> 파일찾기 [0]byt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button"/> 추가 | |
| | ※ 파일 추가 시 '첨부파일추가' 버튼을 계속 클릭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1개 파일의 최대용량은 최대 100M이며 PDF파일로만 첨부 가능합니다. | |

※ '결과분석' 자료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차분석표의 경우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교차분석표와 문항간 교차분석표 등을 실제로 등록한 경우에만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설문지와 공표·보도 예정인 결과분석자료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까지 반드시 모두 등록하여야 함.

※ 결과분석 자료 등록 예시는 [첨부 11] 참조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이나 득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보정한 경우 **▣**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의 등록 ① 및 ②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기준「별지 제2호 서식」】를 각각 등록하여야 함.

하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

최초로 공표 · 보도할 매체와 예정일시를 등록하여야 함.

| | | | |
|------------------|--|----|--------|
| 여론조사결과 | □ 방송·(인터넷)신문·뉴스통신·보도자료등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 |
| | ※ 예) 방송사명, 신문사명, 000홈페이지, SNS 등 자세히 기재. | | |
|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 날 | 00 | 시 00 분 |
| | ※ 여론조사 기본입력 자료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됩니다. ※ 첨부 결과분석 자료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서 24시간 후에 공개됩니다. 다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보도 하기로 한 경우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서 48시간 후에 공개됩니다. | | |

※ 예) 방송사명, 신문사명, 000 홈페이지, SNS 등

거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 · 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음. 다만, 지지도 결과(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는 모두 등록하여야 함(기준 § 13③).

05 등록 자료의 대외 공개

가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에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는 위 03의 등록사항 중 ①부터 ⑯까지 및 ⑰의 사항은 선거여론 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한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함(법 § 108⑦, 기준 § 15① 전단).

나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후에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는 위 03의 등록사항 중 ⑯의 사항은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함) 이후에 공개함(기준 § 15① 전단).

※ 공개시점과 관계없이 법 §108⑦에 따라 공표·보도 전에 전체 질문지·결과분석자료 등 위 03의 등록사항을 전부 등록하여야하며,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다 위 가 및 나 의 경우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 · 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 · 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로 봄(기준 § 15① 후단).

라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의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의 통보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 · 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함(법 § 108⑦, 기준 § 15②).

마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사항 통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기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기준 § 12③).

06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 관련 위반 시 처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 보도하기 전에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 261②).

선거여론조사 결과 기본자료 등록(예시)

| | | | | | |
|--------------------------------------|--|---|---|--|--|
|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 선거구분 | * 선택박스에서 선택 | | | |
| | 지역 | * 선택박스에서 선택 | | | |
| | 선거명 | * 선택박스에서 선택 | | | |
| 조사의뢰자 | | | * 선택박스에서 선택 후 의뢰자명 입력 | | |
| 선거여론조사기관 | | | * 회원가입 시 등록한 명칭으로 자동 입력 | | |
| 조사지역 | | | * '여론조사 명칭'에서 입력한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 | | |
| 조사일시 | | | * 해당 조사를 실시한 일자별 시작, 종료시각 입력 | | |
| 조사대상 | | | 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 |
| 표본의 크기 | | | * 전체 : 자동계산 * 성별 · 연령별: 조사완료와 가중값 적용 사례수를 해당 입력란에 기입 * 지역별: 권역의 개수만큼 추가버튼 이용하여 기입 | | |
| 조사방법 | | | * 선택박스에서 선택 후 아래 입력칸에 백분율 입력(혼합조사의 경우 추가버튼 눌러 조사방법별로 입력) | | |
| 피 조 사 자 선 정 방 법 | 조사대상 | | | | |
| | 전체 | 추출률 | | | |
| | | * 선택박스에서 선택 후 관련 기타 정보 입력 | | | |
| | | 규모 | | | |
| | 표 본 추 출 률 | * 표본추출률의 전체 규모를 기입 | | | |
| | | 구축방법 | | | |
| | | * 표본추출률의 구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입 | | | |
| | | 규모 | | | |
| | | * 해당 조사에 실제로 사용된 DB나 패널의 규모 기입 | | | |
| | | 조 사 대 상 구 성 비 율 | * DB 또는 패널의 성별 · 연령대별 · 지역별 구성비율 기입 | | |
| | | | * 성별 여성 18세~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 | |
| | | | * 연령대별 * 지역별 | | |
| 표본추출방법 | | | * 선택박스에서 선택 후 관련 기타 정보 입력 | | |
| 기타 | | | *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 | | |
| 사용규모 | | | * 총 사용개수 기입 | | |
| 피 조 사 자 접 촉 현 황 | 비적격 사례수 | 결번(OS) | | | |
| | | * 조사시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이메일 조사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 | | | |
| | 그 외의 비적격 사례수(NE) (사업체번호/팩스/대상지역 아님/활당 조사 등) | | | | |
| | * 스마트폰앱조사의 경우 푸시알림 미수신(전원 차단, 해당 앱 삭제 또는 알림 거부 설정),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 포함)의 경우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미수신의 경우를 포함. | | | | |
| | 접촉실패 사례수(I) (통화중/부재중/접촉안됨 등) | | | | |
| | * 이메일조사의 경우 메일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으나 응답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 | | |
| | 접촉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수(R) | | | | |
|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l) | | | * 스마트폰앱조사 ·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 포함)의 경우 푸시알림,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수신 후 해당 URL에 접속하지 않은 사례 포함 | | |
| 합계 | | | * 피조사자접촉현황 입력시 자동계산 | | |
| 접촉률 (I+R)/(I+R+eU) | | | * 피조사자접촉현황 입력시 자동계산 | | |
| 응답률 (l/(I+R)) | | | * 피조사자접촉현황 입력시 자동계산 | | |
|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기본가중 | 산출 | 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3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 |
| | | 적용 | * 셀가중 | | |
| | 추가가중 | 산출 | | | |
| | | 적용 | | | |
| 표본오차 | | | * 표본의 크기 입력시 자동계산 | | |
| 전체 질문지/결과분석 자료 | | | * 첨부할 파일이 전체질문지와 결과분석지가 포함되었는지 체크 후 결과분석 자료 첨부 | | |
| 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 | 공표 · 보도 매체 | *(방송(인터넷)신문 · 뉴스통신 · 보도자료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 중에서 선택 | | | |
| | 공표 · 보도 매체명 | * 공표 · 보도 매체명 기입 | | | |
| | 최초 공표 · 보도일시 지정 | * 예정일시 선택 | | | |

첨부 10-2

이메일조사 피조사자 접촉현황 분류(예시)

| No. | 접촉현황 | 분류 |
|-----|---|--------------|
| 1 | 계정 또는 도메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 결번 |
| 2 | 수신자가 발신자의 계정 또는 메일주소를 수신 거부한 경우 | 비적격 |
| 3 | 메일은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으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접촉실패 |
| 4 | 수신 또는 발신 서버의 일시적 장애로 인해 메일을 수신받지 못하는 경우 | 접촉실패 |
| 5 | 발신자의 메일에서 Win32, Klez 등의 웜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 | 접촉실패 |
| 6 | 수신측 서버의 응답이 없는 경우(응답시간 초과) | 접촉실패 |
| 7 | 메일 확인 후 조사URL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 | 거절 및 중도이탈 |
| 8 | 조사 URL을 클릭하여 조사 진행 중 중단된 경우 | 거절 및 중도이탈 |
| 9 | 조사에 응답 완료된 경우 | 응답완료 |

스마트폰 앱조사 피조사자 접촉현황 분류(예시)

| No. | 접촉현황 | 분류 |
|-----|--------------------------------------|--------------|
| 1 | 결번이거나 서비스가 중지 중인 경우 | 결번 |
| 2 | 전원차단,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거부 설정된 경우 | 비적격 |
| 3 |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송이 안되는 경우 | 접촉실패 |
| 4 | (문자 또는 PUSH 확인 후) 조사 URL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 | 거절 및 중도이탈 |
| 5 | 조사 URL을 클릭하여 조사 진행 중 중단된 경우 | 거절 및 중도이탈 |
| 6 | 조사에 응답 완료된 경우 | 응답완료 |

결과분석 자료(예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① 응답자 특성

| 구 분 | | 조사완료 | | 가중값 적용 기준 | | 가중값 배율 (B/A) | 비고 |
|------------------|--------|---------------|-------|---------------|-------|-----------------|----|
| | | 사례수(명) (A) | 비율(%) | 사례수(명) (B) | 비율(%) | | |
| ▣ 전체▣ | | (1002) | 100 | (1002) | 100 | 1.00 | |
| 성 별 | 남자 | (523) | 52.2 | (496) | 49.5 | 0.95 | |
| | 여자 | (479) | 47.8 | (506) | 50.5 | 1.06 | |
| 연 령 대 별 | 18~29세 | (147) | 14.7 | (163) | 16.3 | 1.11 | |
| | 30대 | (136) | 13.6 | (151) | 15.1 | 1.11 | |
| | 40대 | (186) | 18.6 | (179) | 17.9 | 0.96 | |
| | 50대 | (202) | 20.2 | (196) | 19.6 | 0.97 | |
| | 60대 | (190) | 19 | (172) | 17.2 | 0.91 | |
| | 70세 이상 | (141) | 14.1 | (141) | 14.1 | 1.00 | |
| 지 역 별 | ▣▣시 | (206) | 20.6 | (188) | 18.8 | 0.91 | |
| | □□시 | (311) | 31 | (320) | 31.9 | 1.03 | |
| | △△시 | (104) | 10.4 | (106) | 10.6 | 1.02 | |
| | ☆☆시 | (29) | 2.9 | (29) | 2.9 | 1.00 | |
| | ◎◎시 | (144) | 14.4 | (151) | 15.1 | 1.05 | |
| | ◇◇시 | (102) | 10.2 | (98) | 9.8 | 0.96 | |
| | ○○시 | (94) | 9.4 | (98) | 9.8 | 1.04 | |
| | ▽▽시 | (12) | 1.2 | (12) | 1.2 | 1.00 | |

-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 크기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조사완료 사례수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의 구성비율(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구성비율)에 따라 비례할당한 사례수를 기재합니다.
 4.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만 18세~30대를 통합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②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 분 | | | 조사완료 사례수 | | |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 | | |
|-------------------|--------|--------|----------|-----|-----|---------------|-----|-----|---|
| | |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
| 계 | 18~29세 | 합계 | 1002 | 523 | 479 | 1002 | 496 | 506 | |
| | | 18~29세 | 147 | 93 | 54 | 163 | 85 | 78 | |
| | | 30대 | 136 | 77 | 59 | 151 | 78 | 73 | |
| | | 40대 | 186 | 97 | 89 | 179 | 91 | 88 | |
| | | 50대 | 202 | 102 | 100 | 196 | 99 | 97 | |
| | | 60대 | 190 | 92 | 98 | 172 | 84 | 88 | |
| | | 70세 이상 | 141 | 62 | 79 | 141 | 59 | 82 | |
| | 30대 | 소계 | 206 | 99 | 107 | 188 | 91 | 97 | |
| 지역별 | | 18~29세 | 39 | 22 | 17 | 35 | 17 | 18 | |
| | | 40대 | 32 | 16 | 16 | 32 | 16 | 16 | |
| | | 50대 | 35 | 16 | 19 | 34 | 17 | 17 | |
| | | 60대 | 34 | 16 | 18 | 30 | 14 | 16 | |
| | | 70세 이상 | 27 | 11 | 16 | 25 | 11 | 14 | |
| 40대 | 소계 | 311 | 165 | 146 | 320 | 159 | 161 | | |
| | 18~29세 | 43 | 26 | 17 | 54 | 28 | 26 | | |
| | 50대 | 67 | 34 | 33 | 64 | 32 | 32 | | |
| | 60대 | 55 | 27 | 28 | 51 | 25 | 26 | | |
| | 70세 이상 | 37 | 17 | 20 | 36 | 15 | 21 | | |
| 50대 | 소계 | 104 | 55 | 49 | 106 | 54 | 52 | | |
| | 18~29세 | 12 | 10 | 2 | 17 | 9 | 8 | | |
| | △△시 | | 60대 | 20 | 10 | 10 | 19 | 10 | 9 |
| | | | 70세 이상 | 15 | 6 | 9 | 16 | 7 | 9 |
| 60대 | 소계 | 29 | 18 | 11 | 29 | 14 | 15 | | |
| | 18~29세 | 4 | 3 | 1 | 4 | 2 | 2 | | |
| | 70세 이상 | 4 | 2 | 2 | 5 | 2 | 3 | | |
| | 70세 이상 | 4 | 2 | 2 | 5 | 2 | 3 | | |
| | 70세 이상 | 4 | 2 | 2 | 5 | 2 | 3 | | |
| △△도 | 70세 이상 | 소계 | 29 | 18 | 11 | 29 | 14 | 15 | |
| | | 18~29세 | 4 | 3 | 1 | 4 | 2 | 2 | |
| | | 60대 | 23 | 11 | 12 | 18 | 9 | 9 | |
| | | 70세 이상 | 15 | 6 | 9 | 16 | 7 | 9 | |
| | | 70세 이상 | 15 | 6 | 9 | 16 | 7 | 9 | |
| | | 70세 이상 | 15 | 6 | 9 | 16 | 7 | 9 | |
| | | 70세 이상 | 15 | 6 | 9 | 16 | 7 | 9 | |
| | ☆☆도 | 소계 | 29 | 18 | 11 | 29 | 14 | 15 | |
| 주 : ① 응답자 특성과 같음. | 70세 이상 | 18~29세 | 4 | 3 | 1 | 4 | 2 | 2 | |
| | | 60대 | 8 | 4 | 4 | 6 | 3 | 3 | |
| | | 70세 이상 | 4 | 2 | 2 | 5 | 2 | 3 | |
| | | 70세 이상 | 4 | 2 | 2 | 5 | 2 | 3 | |
| | | 70세 이상 | 4 | 2 | 2 | 5 | 2 | 3 | |
| | | 70세 이상 | 4 | 2 | 2 | 5 | 2 | 3 | |
| | | 70세 이상 | 4 | 2 | 2 | 5 | 2 | 3 | |

주 : ① 응답자 특성과 같음.

③ 교차분석표[예시]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교차분석, 문항간 교차분석 등을 공표·보도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교차분석표를 함께 등록합니다.

※ 사례수를 기재할 경우 조사완료 사례수가 기준입니다.

1. 후보 지지도

| 구 분 | | 조사 완료 사례수 | A 후보 | B 후보 | C 후보 | 지지후보 없음 | 모름 /무응답 | 기종값 적용 사례수 |
|-----------------------|-------------|-----------|------|------|------|---------|---------|------------|
| ▣ 전체 ▣ | | 1002 | 23.7 | 19.0 | 17.8 | 28.8 | 10.6 | 1002 |
| 성 별 | 남자 | 523 | 23.5 | 15.7 | 18.0 | 33.8 | 9.0 | 496 |
| | 여자 | 479 | 24.0 | 22.3 | 17.6 | 23.9 | 12.3 | 506 |
| 연 령 대 별 | 18~29세 | 147 | 20.2 | 22.5 | 16.4 | 26.9 | 14.0 | 163 |
| | 30대 | 136 | 20.4 | 19.5 | 20.7 | 27.1 | 12.4 | 151 |
| | 40대 | 186 | 29.6 | 21.2 | 11.2 | 29.8 | 8.1 | 179 |
| | 50대 | 202 | 20.7 | 16.7 | 19.6 | 35.7 | 7.3 | 196 |
| | 60대 | 190 | 26.1 | 16.6 | 20.3 | 25.2 | 11.8 | 172 |
| | 70세 이상 | 141 | 30.6 | 22.4 | 19.8 | 22.0 | 5.2 | 141 |
| 지 역 별 | ○○시/○○군/○○도 | 206 | 20.8 | 20.5 | 19.0 | 26.5 | 13.3 | 188 |
| | ○○시/○○도/○○군 | 311 | 25.4 | 16.3 | 19.7 | 28.3 | 10.3 | 320 |
| | □□도 | 104 | 18.4 | 20.5 | 12.9 | 37.8 | 10.4 | 106 |
| | △△시/△△도 | 29 | 14.8 | 17.4 | 30.7 | 33.4 | 3.6 | 29 |
| | ☆☆시/○○도/□□도 | 144 | 26.6 | 20.5 | 15.5 | 29.3 | 8.2 | 151 |
| | △△도 | 102 | 30.9 | 17.0 | 13.4 | 23.6 | 15.2 | 98 |
| | ■■■도 | 106 | 20.3 | 22.7 | 18.8 | 29.5 | 8.7 | 110 |
| 이 념 성 향 별 | 진보 | 234 | 23.9 | 23.4 | 16.3 | 28.0 | 8.4 | — |
| | 중도 | 343 | 27.2 | 13.4 | 18.5 | 30.9 | 10.0 | — |
| | 보수 | 330 | 19.2 | 17.5 | 18.4 | 36.0 | 8.8 | — |
| | 모름/무응답 | 95 | 20.4 | 30.0 | 11.9 | 16.1 | 2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 구 분 | | 조사 원료 사례수 | A 후보 | B 후보 | 지지후보 없음 | 모름 /무응답 | 가중값 적용 사례수 |
|-----------------------|-------------|--------------|------|------|------------|------------|---------------|
| ▣ 전체 ▣ | | 1002 | 25.4 | 21.7 | 37.8 | 15.1 | 1002 |
| 성 별 | 남자 | 523 | 24.6 | 19.4 | 38.6 | 17.4 | 496 |
| | 여자 | 479 | 26.2 | 23.9 | 37.1 | 12.8 | 506 |
| 연 령 대 별 | 18~29세 | 147 | 21.8 | 22.2 | 41.1 | 14.9 | 163 |
| | 30대 | 136 | 27.8 | 20.9 | 34.8 | 16.5 | 151 |
| | 40대 | 186 | 42.9 | 19.5 | 28.4 | 9.1 | 179 |
| | 50대 | 202 | 22.2 | 23.7 | 39.3 | 14.8 | 196 |
| | 60대 | 190 | 16.0 | 21.8 | 43.2 | 19.0 | 172 |
| | 70세 이상 | 141 | 21.1 | 15.5 | 42.3 | 21.1 | 141 |
| 지 역 별 | ○○시/▽▽시/△△도 | 206 | 23.5 | 26.0 | 34.4 | 16.2 | 188 |
| | □□시/●●도/■■도 | 311 | 26.1 | 21.8 | 37.6 | 14.5 | 320 |
| | □□도 | 104 | 25.6 | 12.2 | 44.8 | 17.4 | 106 |
| | ◇◇시/◇◇도 | 29 | 43.5 | 8.9 | 32.1 | 15.5 | 29 |
| | ☆☆시/◎◎도/▣▣도 | 144 | 22.2 | 22.4 | 40.9 | 14.5 | 151 |
| | △△도 | 102 | 19.9 | 10.3 | 51.2 | 18.5 | 98 |
| | ■■도 | 106 | 32.5 | 37.4 | 20.7 | 9.4 | 110 |
| 이 념 성 향 별 | 진보 | 234 | 31.0 | 25.3 | 31.3 | 12.4 | - |
| | 중도 | 343 | 18.5 | 14.7 | 48.8 | 18.0 | - |
| | 보수 | 330 | 20.3 | 31.4 | 37.0 | 11.2 | - |
| | 모름/무응답 | 95 | 11.9 | 27.9 | 35.9 | 2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당선희망 정당 후보

| 구 분 | | 조사 원료 사례수 | A정당 후보 | B정당 후보 | 지지후보 없음 | 모름 /무응답 | 가중값 적용 사례수 |
|-----------------------|-------------|--------------|-----------|-----------|------------|------------|---------------|
| ▣ 전체 ▣ | | 1002 | 39.7 | 32.3 | 15.9 | 12.1 | 1002 |
| 성 별 | 남자 | 523 | 36.9 | 34.3 | 17.1 | 11.7 | 496 |
| | 여자 | 479 | 42.4 | 30.2 | 14.8 | 12.5 | 506 |
| 연 령 대 별 | 18~29세 | 147 | 40.2 | 27.2 | 19.0 | 13.6 | 163 |
| | 30대 | 136 | 40.8 | 28.3 | 17.8 | 13.1 | 151 |
| | 40대 | 186 | 50.8 | 23.4 | 17.7 | 8.1 | 179 |
| | 50대 | 202 | 40.1 | 30.8 | 16.0 | 13.2 | 196 |
| | 60대 | 190 | 30.2 | 45.6 | 11.5 | 12.7 | 172 |
| | 70세 이상 | 141 | 30.2 | 50.4 | 6.4 | 13.0 | 141 |
| 지 역 별 | ○○시/○○군/○○도 | 206 | 42.1 | 28.6 | 18.8 | 10.5 | 188 |
| | ○○시/○○군/○○도 | 311 | 40.0 | 30.0 | 16.1 | 13.8 | 320 |
| | □□도 | 104 | 34.2 | 38.2 | 16.3 | 11.3 | 106 |
| | △△시/△△군 | 29 | 46.9 | 32.7 | 7.0 | 13.4 | 29 |
| | ☆☆시/○○도/□□도 | 144 | 38.3 | 37.1 | 14.8 | 9.9 | 151 |
| | △△도 | 102 | 23.6 | 48.4 | 16.8 | 11.2 | 98 |
| | ■■■도 | 106 | 56.9 | 14.1 | 14.2 | 14.9 | 110 |
| 이 념 성 향 별 | 진보 | 234 | 49.8 | 24.2 | 15.0 | 10.9 | - |
| | 중도 | 343 | 27.3 | 49.9 | 12.2 | 10.6 | - |
| | 보수 | 330 | 37.9 | 31.5 | 25.7 | 4.8 | - |
| | 모름/무응답 | 95 | 34.1 | 17.2 | 36.8 | 1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 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이외 “가중값 적용 사례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제외)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만 18세 ~30대를 통합할 경우 교차분석표에서도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www.nesdc.go.kr

제 8 장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1. 공표의 의미
2. 최초 공표 · 보도
3. 인용 공표 · 보도
4. 추가 가중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5.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 공표 · 보도
6. 가중값 배율 등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 공표·보도
7.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8. 공표·보도 금지사항
9. 공표·보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제8장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01 공표의 의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의 요건을 충족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 ②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 SNS · 인터넷 게시
- ③ 기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02 최초 공표 · 보도

누구든지(방송, 신문, 입후보예정자, 일반인 등)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 보도할 때에는 기준으로 정한 아래 사항을 함께 공표 · 보도하여야 함(법 § 108⑥, 기준 § 18①).

- ① 조사의뢰자
-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 ③ 조사지역
- ④ 조사일시

- ⑤ 조사대상
- ⑥ 조사방법
- ⑦ 표본의 크기
-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 ⑨ 응답률
- ⑩ 표본오차
- ⑪ 질문내용
-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에 한함)

03 인용 공표 · 보도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위 02에서 열거한 사항을 모두 함께 공표·보도할 필요는 없으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다만, 방송(「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한다)에 출연한 자(진행자는 제외한다),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선거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할 수 있음(기준 § 18③).

- ①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 ②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04 추가 가중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보정하여 이를 등록(제7장-04-티)하고 공표 ·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본가중 및 추가가중에 사용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자료를 구분하여 모두 공표 · 보도하여야 함(기준 § 18②).

05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 공표 · 보도

가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 · 보도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함께 공표 · 보도하여야 함.

① 분석의뢰자 ② 분석기관 · 단체 ③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④ 분석방법

⑤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분석대상 중 출처는 원칙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모두 명시하되, 나열하기 곤란한 다수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조로 대체 가능

나 이 경우 분석결과의 객관성 ·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06 가중값 배율 등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 공표·보도

최소 표본의 크기 및 가중값 배율의 범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로 분석한 결과를 공표·보도 하는 경우에는 분석경위와 방법을 밝혀야함(기준 § 5②).

예) △△도 여론조사결과는 △△도 내 5개 선거구 조사를 합산하여 2023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이전 기준으로
제출되었던(설가중 적용) 결과임

07 공표 · 보도 시 준수사항

가 조사지역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함께 공표 · 보도(기준 § 19)

나 조사일시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함께 공표 · 보도(기준 § 19)

※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함께 공표 · 보도

다 조사방법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때 사용한 아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함께 공표·보도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한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함께 공표·보도(기준 § 19)

- ① 직접(대인)면접조사
- ②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
- ③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
- ④ 우편조사
- ⑤ 표적집단면접조사
- ⑥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survey)]
- ⑦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 ⑧ 그 밖의 조사방법

라 표본의 크기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기준 § 2)

* 표본의 크기는 가중치 보정 전의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실제 응답 완료자의 수를 말함.

마 피조사자 선정방법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 표본추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함께 공표·보도하되, 전화면접조사·전화자동응답(ARS)조사 및 패널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야 함(기준 § 19).

- ① 전화면접조사·전화자동응답(ARS)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그 사용비율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함께 공표·보도
- ② 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에는 최초 공표·보도시 해당 조사에 사용한 무선 응답비율과 함께 ‘권고 무선 응답비율’ 명시
예) 무선ARS(가상번호) 50%, 유선ARS(RDD) 50% ※ 중앙여론조사 ‘권고 무선 응답비율’은 70% 이내임.

- ③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함께 공표·보도

08 공표·보도 금지사항

가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 포함)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함(법 § 108⑦·§ 108⑧1, 기준 § 17).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하여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라도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공표·보도할 수 있음.

나 누구든지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법 § 108⑫).

① 정당(장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실시 (의뢰)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② 법 § 8의8⑩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다만,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다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법 § 108⑧2, 기준 § 17).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라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법 § 96①).

마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법 § 96②).

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②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바** 누구든지 유선전화만을 사용하여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기준 § 4⑪).

09 공표·보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와 관련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6①).

-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의뢰)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행위
- ②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한 행위
-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행위

📍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2②).

📍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2①).

- 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 ②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 108⑥, ⑧· § 261②)

- ①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 하지 않은 경우
- ②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 ③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한 자

제 9 장

선거여론조사 심의

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3. 공표 ·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결정
5. 심의 · 결정사항 등 공개
 - 첨부 12 :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첨부 13 :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 · 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9장 | 선거여론조사 심의

0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 설치 목적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임(법 § 8의8①).

나 위원 구성(법 §8의8②)

- ◆ 정수 : 9인 이내
- ◆ 선정 :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및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 ◆ 임기 : 3년

다 여론조사 관할(법 §8의8⑨)

- ◆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 시·도심의위원회 :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라 주요 직무(법 §8의8⑦, 운영규칙 §3)

- ◆ 공통사항
 - 선거여론조사가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에 관한 사무

-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무
- 공표 ·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 · 후보자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중앙심의위원회

- 기준의 제 · 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공표에 관한 사무
-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에 관한 사무
-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 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02

선거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자 : 선거여론조사 신고내용에 대한 관할 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법 § 108④)

📍 신청방법 : 서면(운영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증빙자료 첨부 가능(운영규칙 § 19①)

📍 신청처(아래 03에서 같음)

-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 · 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시 · 도심의위원회 : 해당 시 · 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03 공표 ·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 청 : 공표 ·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 · 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법 § 108⑨2.)
- 방 법 : 서면(운영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증빙자료 첨부 필수(운영규칙 § 19②)

0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결정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각하 또는 기각 · 인용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함(운영규칙 § 22).
- 선거여론조사가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 경고 ·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 ·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함(법 § 8의8⑩).
- 시정명령 · 경고, 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심의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재심청구 가능함(운영규칙 § 18의3①).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 § 8의8⑫, § 108⑨2, 운영규칙 § 21).

05 심의 · 결정사항 등 공개

-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음(운영규칙 § 18의2①).
-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음(운영규칙 § 18의2②).

○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여론조사 실시 신고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자

여론조사실시(변경)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정당 · 후보자

공표 ·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 · 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사무국

- 신청서 접수
- 요건 검사
 - 요건 불비시 : 반려, 보정 요구
 - 요건 구비시 : 위원회의 상정
-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 단체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 자문 · 전문위원의 자문
- 심의안 작성
- 위원회의 소집통지

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결과

검토위원

안건의 검토결과

심의위원회

-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정당 · 후보자
 - 여론조사 실시, 결과 공표 · 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
-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의견 개진
- 심의 의결
 - ※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의결



재심청구(1회) (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 관련)

심의위원회 결정

- 시정명령 · 경고 · 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 조치
- 시정명령 · 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불이행시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 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통보

첨부 13

[운영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 |
|---------------------|-------------------|--|--------------|--|
| 이 의 신청자 | (정당명) · (후보자명) | | 생년월일 (성별)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보완요구 대 상 여론조사 | 공표·보도매체 | | | |
| | 공표·보도일자 | | | |
| | 공표·보도내용 | | | |
| |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 ○ 당
 대 표 자 ○ ○ ○
 후 보 자 ○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주: 1. 정당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3. '공표·보도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www.nesdc.go.kr

제 10 장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조치

1. 조사 근거
2. 조사 주체
3. 조사권 발동요건
4. 조사 대상
5. 조사 권한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7. 위반행위 조사 관련 처벌
8. 유형별 위반사례 예시

■ 첨부 14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 10 장 |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조치

01

조사 근거

법 § 8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법 § 272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02

조사 주체

중앙 및 시·도 심의위원회 위원·직원

03

조사권 발동요건

- 법 또는 기준 위반행위에 관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후보자(당내경선후보자 포함)·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행법의 신고를 받은 경우

04 조사 대상

법 또는 기준 위반혐의 관계인

05 조사 권한

가 장소출입 및 질문·조사권

- 위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혐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질문·조사를 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위원·직원의 법 또는 기준 위반혐의 장소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위원·직원의 법 또는 기준 위반혐의 장소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고발 등 조치(법 §256⑤)

나 자료제출요구권

- 법 또는 기준 위반행위의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고발 등 조치(법 §256①③⑤)

다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

-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법 §261⑥⑧)

라 증거물품 수거권

- 위반행위 현장에서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증거물품 수거목록을 작성·교부하고 이를 수거할 수 있음.

■ 현장조치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0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행정조치

- 공명선거 협조요청
-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경고

나 고발 등 조치

- 고발 :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사의뢰 : 고발조치에 상당하는 위법행위가 존재하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수사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다 과태료 부과

- 부과권자 : 관할 심의위원회
- 부과근거 : 법 § 261, 규칙 § 143, 질서행위규제법, 질서행위규제법시행령
- 처분대상 : 법 § 261②1~4, 법 § 261③5, 법 § 261⑥2, 법 § 261⑧1의2·6

● 부과기준 : 규칙 별표3(부록 4)에 의함.

● 과태료의 면제 및 감경 · 가중

① 법에 의한 감경 · 가중

처분대상 행위의 동기, 위반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규칙 § 143③).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2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 5 및 § 5의2② · ③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 2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①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첨부 14(규칙별지 제6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법 § 261⑪).

②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함.
- 관할 심의위원회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함.
※ 이의제기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기 전까지는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07

위반행위 조사 관련 처벌

- 선거여론조사 자료 제출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6①).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심의위원회의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6③).
- 위원·직원의 법 또는 기준 위반혐의 장소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 256⑤).
-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 261⑥).
- 관할 심의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 261⑧).

08 유형별 위반사례 예시

▶ 공무원 등의 선거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행위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 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형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5①10.)

-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결과를 편집하여 자신의 페이스북(회원 4,900명), 카카오톡(회원 900명)에 게시하고,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한 행위
- 현직 교장이 “□□□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전교육감, 2018 지방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 28.3%, ☆☆☆ 17.5%”라는 내용과 □□□ 후보의 사진이 포함된 웹포스터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한 행위
- 공무원 등이 국회의원선거 등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언론에 보도된 정당·후보자 지지도 등을 여러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알리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금지

제96조(허위논평 · 보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형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52②)

● 여론조사결과 왜곡 · 공표

- 📍 왜곡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사정을 알면서(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함)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공표하는 행위(대법원 2017도8822)
-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지지율 수치를 변경하여 SNS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
- 📍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정당보다는 신뢰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A당 지지층에서 가장 높았다’는 부분을 발견하여 마치 ‘A당의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처럼 왜곡하여 정당 지지율 그래프를 만들어 문자메시지(52,654건)를 통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한 행위
- 📍 ‘유권자는 현직 국회의원(23.5%)보다 정치신인(54.5%)을 지지하겠다’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정치신인’란을 ◇◇◇후보의 사진으로 변경하여 마치 ◇◇◇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해당 후보자 지지자가 모인 네이버밴드(466명 참여)에 게시한 행위
- 📍 실제 여론조사에서 □□□ 후보자의 지지율이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예비후보자 중 지지율이 1위였음을 이유로 ‘각종 여론조사서 검증된 지지율 1위’라고 기재하여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행위
- 📍 ○○당 후보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당내경선 군수후보 여론조사(선후보)”로 수정하고 □□□의 적합도 36.3%를 26.3%로 왜곡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표한 행위

● 여론조사결과 도출과정에서의 조작

- 📍 여론조사기관이 가중값 배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20~30대 표본을 추가하고 60대 표본수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한 행위
- 📍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결과를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응답완료 표본을 자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 📍 여론조사기관이 ‘보통 정도이다’로 응답한 비율을 긍정적 평가로 임의로 합산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
- 📍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헌에서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합산하여 경선을 하도록 하고 있어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없는 해당 여론조사로는 경선 관련 후보자별 지지도를 얻을 수 없음에도 권리당원 지지율을 자의적으로 산출·합산하여 해당 정당의 경선방침 적용시 본인이 경쟁 후보를 앞선다는 내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행위

● 허위 여론조사결과 생산·공표

- 📍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대법원 2017도8822)
- 📍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한 행위
- 📍 실제 출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당이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했는데 ☆☆☆ 후보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나왔다”라고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생성하여 이를 공표한 행위

▶ 선거일 전 6일 이후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형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③1.)

- 📍 선거일전 6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 📍 선거일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 또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 📍 선거일전 4일 유세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 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한 행위

▶ 선거일 전 60일 이후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③1.)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를 밝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후보자의 육성으로 실시하는 것은 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것으로 봄.

▶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261③5.)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의정활동에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포함하여 정책·공약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지 않거나,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 여론조사 실시지역을 ‘□□□도’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신고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시’ 만을 조사지역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행위
- ▶ 실시신고서에 기재한 기간과 다른 기간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행위
- ▶ 질문내용, 후보자 경력 등을 실시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이 아닌 때에 변경신고서를 송부하여 유효한 변경 신고 없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행위
※ 단,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사변경신고 가능(법 §274)
* 제22대 국선 : 2024. 3. 23. ~ 4. 10.

▶ 표본의 대표성 위반 등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①5.)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 📍 사업체 전화번호, 특정 정당의 당원명부, 지지자 전화번호 등이 혼합되어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피조사자의 지역 또는 연령 등을 묻는 질문을 누락하여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입후보예정자의 후원회장 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지자들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편향·응답유도

- 📍 질문지의 설문을 긍정·부정 항목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현재 도지사 후보 중 I 정당 M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N의 발전을 위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 도지사에 M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L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군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I 정당 후보 O 후보라고 생각되시면 1번, P정당 Q 후보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놀러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
- 📍 설문사항에 A의 이름을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A의 인지도를 높이고, “A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A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여론조사를 한 행위
- 📍 선거여론조사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불리한 사실을 먼저 나열한 후 지지여부를 질문하는 등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
- 📍 가상대결이라는 언급없이 다수의 유력한 후보자를 누락하고 2인의 후보자만 보기문항으로 제시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기타 유형

- 📍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선거여론조사 참여자를 모집하는 행위
- 📍 여론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거나 여론조사 질문 종료 후에 밝히는 행위

▶ 공표 · 보도 요건 준수 및 자료보관 의무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가) 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 단체는 조사설계서 · 피조사자선정 · 표본추출 · 질문지작성 ·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나) 하여야 한다.}}

- 가) 과태료 : 3천만원 이하(§261②2.)
- 나) 형 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③1.)

- 📍 SNS 등을 통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인용 공표하면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누락하는 행위
- 📍 여론조사 의뢰 여부 또는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 까지 보관하지 않은 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 등록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과태료 : 3천만원 이하(§261②3.)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해당 여론조사 의뢰자로부터 최초 공표·보도 일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표·보도 전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행위

▶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과태료 : 3천만원 이하(§261②4.)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또는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등의 표현으로 공표한 행위

- 여론조사기관 또는 언론사 등이 내부 활용을 위하여 비공표용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유·무상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 지지자가 모인 네이버밴드에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후보와 현 시장이 초박빙 접전 중인 걸로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 준수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과태료 : 3천만원 이하(§261②4.)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특정표본추출틀을 이용하고도 RDD 방식으로 실시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비적격 사례수, 접촉실패 사례수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의 일부를 축소시켜 사실과 다르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위
- 스크린 문항의 응답항목에 지역선택 문항과 연령선택 문항 일부를 제외(‘□□지역 외’ 및 ‘만 18세 미만’ 선택항목 미포함)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특정지역의 표본을 2배로 생성하거나 일부 지역을 배제하고 표집틀을 구성하거나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피조사자 선정시 A 후보자의 연고지 지역에서는 과소표집한 반면, B 후보자의 연고지 지역에서는 인구수에 비하여 과대표집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한 행위
-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 문항에 따라 정당·후보자 명칭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시키지 않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순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
- 📍 질문순위를 정함에 있어 불명확한 기준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유리하도록 현역 국회의원의 순서를 맨 처음에 배치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구성
- 📍 ‘조사완료 된 사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종분석 표본’을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
- 📍 (예비) 후보자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의 경력은 법 §60의2① 또는 §49①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 (기준§6④)

▶ 자료제출 의무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자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형벌 : 거짓자료 제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①5.)}, 자료미제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③1.)}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

▶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지시·권유·유도 행위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①5.)

- ‘□□당 당내경선 ARS투표와 관련하여 “일반인 대상 ARS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인 경우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면 ◎◎◎에게 두 번 투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거짓응답 권유글을 SNS 등에 게시한 행위
 - ‘△△당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다수의 선거구민(107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행위
- ※ (참고) ○○군 입후보예정자 A를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군으로 변경한 뒤 당내경선 여론조사 ARS 투표전화를 수신하여 ○○군 선거구민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A에 대한 지지응답을 한 행위 → 「공직선거법」§57의3① 위반(전주지법 남원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합38 확정 판결)

▶ 선거여론조사 중복응답 등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①5.)

- ▶ 예비후보자의 가족·측근 등 명의로 KT 단기유선전화를 다수(총 449회선) 설치하여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전환 한 다음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행위
- ▶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20회선의 단기전화를 통하여 2차례의 선거여론조사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같은 사람이 중복응답하는 행위
- ▶ 선거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다수 구매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선거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 등 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①5.)

-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의뢰하여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 후보자 의뢰로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후 후보별 지지율 등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위임(여론조사 비용은 해당 입후보자예정자들이 납부)받아, 자신의

비서관에게 여론조사를 의뢰·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표한 행위

※ 위 사례의 경우 입후보예정자들이 실제 여론조사 의뢰자이기 때문에, 해당 입후보예정자들은 실시신고 없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위 국회의원은 후보자 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임.

📍 실제 의뢰자는 입후보예정자 임에도 여론조사기관이 이를 숨기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거여론조사 실시 후 언론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이 경우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때에는 공표·보도가 금지된 선거 여론조사에 가상번호를 사용한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가상번호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법 제25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될 것임.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 휴대전화 가상번호 목적외 사용 등 금지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⑦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한다)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 · 연령 · 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5. 제6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 ⑨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 · 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 형벌 : 법 §57의8⑦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57의8⑨, §57의8⑩ 위반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108의2⑤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57의8⑦ 제1호, 제2호 위반자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108의2⑤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장 생성·제공 관련 위반시 처벌(52p.) 참조

▶ 사전선거운동 금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육성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 2023. 12. 12.

- 선거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비록 여론조사의 형식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1998. 6. 9. 선고 97조856 판결).

첨부 1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규칙 별지 제60호 서식)

| | | | | |
|-----------------|----------------|------|------------|--|
| 신청인 |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
| | 과태료부담자와의 관계 | | | |
| | 주소 | | | |
| 과태료 처분사유 | 부과기관 | | 과태료 부담자 | |
| | 고지받은 일자 | | 과태료 금액 | |
| | 과태료 처분사유 | | | |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 | |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부록

- 1)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 2) 선거여론조사기준
- 3)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록 1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2. 8.>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2. 8.>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 2. 8.>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2. 8.>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 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2. 8.>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4., 2017. 2. 8.>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7. 2. 8.>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 위원회를 포

• [시행 2023. 9. 2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3호, 2023. 9. 22., 일부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8.>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2. 8.>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신설 2017. 2. 8.>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

공직선거관리규칙

공 직 선 거 법

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2. 8.>

⑯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 · 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본조신설 2014. 2. 13.]

[제목개정 2017. 2. 8.]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 · 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 · 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 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 · 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 · 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 17., 2023. 7. 31.>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2 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다.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6. >

③ (생략)

[본조신설 2005. 8. 4.]

공직선거관리규칙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 ④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연월일

- ⑥ 법 제8조의9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에 따른다.
-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⑧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분조신설 2017. 2. 24.]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7. 2. 24.>]

- ⑨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 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7. 31.>

1. 정기 점검 : 연 1회

2. 수시 점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공 칙 선 거 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 ③ (생략)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8.>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2. 8.>

⑦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한다)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 · 연령 · 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 ② (생략)

③ 법 제57조의8제2항에 따라 정당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가 기재사항, 정당의 경선선거인 수 또는 여론수렴 대상자 수의 30배 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제1항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보낸다. <개정 2017. 2. 24.>

④ 관할 위원회는 법 제57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정당에 제공하여야 할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당에 통보기한을 정하여 그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⑤ 관할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당이 조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수를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 위원회가 지정한 통보기한까지 해당 정당이 조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안내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최대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가 법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요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해당 정당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요청건수 및 요청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본조신설 2016. 1. 15.]

[제목개정 2017. 2. 24.]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10으로 이동 <2016. 1. 15.>]

공직선거법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5. 제6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⑧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⑨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⑫ · ⑬ (생략)

[본조신설 2016. 1. 15.]

[제목개정 2017. 2. 8.]

공 칙 선 거 관 리 규 칙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라 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이용자”라 한다)에게 법 제57조의8제6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2. 24., 2020. 1. 17.>

1.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게시
2. 전자우편 전송
3. 우편물 발송

②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이용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24.>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5.]

제2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② (생략)

[본조신설 2016. 1. 15.]

[제목개정 2017. 2. 24.]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7(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후단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4., 2020. 1. 17., 2022. 1. 26.>

1. 성(性): 남성 또는 여성

2. 연령: 20대(18세 및 19세를 포함한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3. 거주지역

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 단위

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자치구·시·군 단위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선거구, 자치구·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 또는 읍·면·동 단위

마. 여론수렴: 시·도, 자치구·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

[본조신설 2016. 1. 15.]

[제목개정 2017. 2. 24.]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57조의8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에 따른다.

<개정 2017. 2. 24.>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부를 정보저장매체에 암호화하여 저장·봉인한 후 관할 위원회를 경유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한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위원회 경유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 표지를 해당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③ 관할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정당에 제공하는 때에는 그 제공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④ 정당이 법 제5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은 날부터 그 당내경선의 선거일(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경선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1. 경선 일정에 관한 안내

2. 투표참여에 관한 홍보

3.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

⑤ 법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7. 2. 24.>

⑥ 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본조신설 2016. 1. 15.]

[제목개정 2017. 2. 24.]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당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 번호의 비용”이라 한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사)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해당 정당에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정당은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④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이 20일보다 짧은 경우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은 일할(割)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 2. 24.>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 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당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본조신설 2016. 1. 15.]

[제목개정 2017. 2. 24.]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9.>

②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 2. 29.>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2. 2. 29.]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2005. 8. 4., 2017. 2. 8., 2017. 3. 9.>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2008. 2. 29., 2010. 1.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4. 2. 13., 2015. 12. 24., 2017. 2. 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2. 13., 2017. 2. 24.>

1.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3. 삭제 <2017. 2. 24.>

②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2014. 2. 13.>

③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2. 3. 2., 2014. 2. 13.>

④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 제108조제13항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

공직선거법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3., 2017. 2. 8.>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 11. 14., 2010. 1. 25., 2012. 2. 29., 2014. 2. 13., 2015. 12. 24., 2017. 2. 8.>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공 칙 선 거 관 리 규 칙

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2. 24.〉

⑤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7. 2. 24.〉

[본조신설 2010. 1. 25.]

[제목개정 2012. 3. 2.]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1. 14., 2010. 1. 25., 2012. 2. 29., 2014. 2. 13., 2015. 12. 24.>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 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 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2. 8.>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2. 13., 2015. 12. 24., 2017. 2. 8.>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2. 29., 2014. 2. 13., 2015. 12. 24., 2017. 2. 8.>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0. 1. 25., 2012. 2. 29., 2014. 2. 13.>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15.>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 번호를 차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 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2. 8. 2021.3.23>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 2. 8.>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9., 2014. 2. 13., 2016. 1. 15., 2017. 2. 8.>

[제목개정 2015. 12. 24.]

공직선거관리규칙

공 직 선 거 법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목적 · 내용 및 기간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종전 제108조의2는 제108조의3으로 이동 <2017. 2. 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② 법 제108조의2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25조의4(제1항·제2항을 제외한다)·제25조의5·제25조의6(제2항을 제외한다)·제25조의7(제3호마목을 제외한다)·제25조의8(제4항을 제외한다)·제25조의9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2. 24.]

[종전 제48조의5는 제48조의6으로 이동 <2017. 2. 24.>]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2004. 3. 12., 2010. 1. 25., 2017. 2. 8.>

1. ~ 9. (생략)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2011. 7. 28.>

1. ~ 10. (생략)

11.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 · ⑤ (생략)

[본조신설 2000. 2. 16.]

[제목개정 2011. 7. 2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① · ② (생략)

③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 3. 2., 2010. 1. 25., 2012. 3. 2., 2017. 2. 24., 2020. 12. 29.〉

1. · 2. (생략)

2의2. 법 제120조제10호 단서에 따라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3. · 4. (생략)

④ (생략)

[본조신설 2000. 2. 16.]

[제목개정 2004. 3. 12.]

공 칙 선 거 법

-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2. 24.>>
-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2. 24.>>
- ③ · ④ (생략)

[제목개정 2015. 12. 24.]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9., 2014. 2. 13., 2015. 12. 24., 2016. 1. 15., 2017. 2. 8.>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2.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57조의8제9항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57조의8제10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공직선거관리규칙

공 직 선 거 법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09. 2. 12.,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2015. 8. 13., 2015. 12. 24., 2016. 1. 15., 2017. 2. 8., 2023. 8. 30. >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타. (생략)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거.·너. (생략)

2.~4. (생략)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07. 1. 3., 2008. 2. 29., 2010. 1. 25., 2012. 1. 17., 2014.

공직선거관리규칙

공 직 선 거 법

1. 17., 2014. 2. 13., 2015. 12. 24., 2017. 2. 8., 2018. 4. 6., 2020. 12. 29., 2022. 1. 18.〉

1.~11. (생략)

12.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혀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목개정 2015. 8. 13.]

[2017. 2. 8. 법률 제14556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제2호를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7.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 제1호 카목을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7.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 제1호 아목을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3.6.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3항 제1호 아목을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7.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3항 제1호 아목을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11.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3항 제1호 아목을 개정함.]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별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공직선거관리규칙

공 직 선 거 법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13.>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제3항 · 제6항, 제242조제1항 · 제2항, 제243조제1항, 제245조제1항, 제246조제1항, 제249조제1항, 제255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25.]

공직선거관리규칙

공 직 선 거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2. 8.>

1.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 · 정정보도문의 계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4. 2. 13., 2015. 8. 13., 2017. 2. 8., 2018. 4. 6. 2022. 1. 18.>

1. ~ 4. (생 략)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④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2014. 2. 13., 2017. 2. 8.>

1. (생 략)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 4.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5. 4. 1., 1998. 4. 30., 2000.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법 제261조제10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기탁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4. 2. 13., 2017. 2. 24.>>

② 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2014. 2. 13.>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2014. 2. 13.>

④~⑧ (생략)

⑨ 법 제261조제10항에 따라 해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4. 2. 13.>>

⑩ 법 제261조제1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4. 2. 13.>

⑪ 법 제261조제12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4. 6.>

⑫ 부과권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7. 2. 24., 2018. 4. 6.>

공직선거법

2. 16.,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4. 1. 17., 2014. 2. 13.〉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6.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7. 1. 3., 2008. 2. 29., 2009. 2. 12., 2010. 1. 25., 2014. 1. 17., 2014. 2. 13., 2015. 8. 13., 2017. 2. 8.〉

1. (생략)

1의2. 제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

2.~5. (생략)

6.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⑨ (생략)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2014. 2. 13., 2017. 2. 8.〉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2014. 2. 13. 2020. 12. 29.〉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 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7조(결정의 고지)

-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②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공 직 선 거 법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자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6.><개정 2015. 8. 13.]
[2010. 1. 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9. 3. 26.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9항(종전의 제6항)을 개정함]
- [2023. 8. 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1.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 제4호를 개정함.]
[2023. 8. 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1.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 제3호를 개정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 직 선 거 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5. 8. 4., 2009. 2. 3., 2010. 1. 25., 2012. 1. 26., 2014. 2. 13. >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의 임 · 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② · ③ (생략)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위원 ·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 · 예비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 · 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①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 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 소명서를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 직 선 거 법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04. 3. 12.>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 2. 16., 2004. 3. 12.>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 3. 7.>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⑧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공 직 선 거 관 리 규 칙

〈개정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② 각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1. 14.]

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① 각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256조제5항제1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21., 2014. 2. 13.〉

② 위원·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③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2. 3. 21.〉

④ 위원·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⑤ 위원·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당해물품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⑥ 위원·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6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공 직 선 거 법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13. 8. 13.〉

[본조신설 1997. 11. 14.]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4. 2. 13.〉

⑦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0.〉

⑧ 법 제27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 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2006. 5. 10.〉

⑨ 법 제272조의2제8항에 따라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안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본조신설 1997. 11. 14.]

과태료부과기준(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

(단위 : 만원)

| 처분대상 | 관계법조 | 법정 상한액 | 부과기준 |
|--|---|-----------|--|
|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 ·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통보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 법 제261조제2항 제1호 · 법 제8조의8제10항 | 3,000 | <p>가. 시정명령 ·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통보를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500</p> <p>나. 이행기간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0</p> |
| 2의2.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 (여론조사 의뢰자로부터 공표 · 보도 예정일시를 통보 받고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거나, 여론조사 의뢰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공표 · 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 포함) | ○ 법 제261조제2항제3호 · 법 제108조제7항 | 3,000 | <p>가. 제108조제7항 전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고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때 : 1,500</p> <p>나.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매 1일마다 가산액 : 100</p> <p>다. 제108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 1,500</p> |
| 2의3.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 법 제108조제6항 · 법 제108조제8항 | 3,000 | <p>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때</p> <p>① 모든 사항을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 1,500</p> <p>② 일부 사항을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 750</p> <p>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때 : 3000</p> <p>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때</p> <p>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특정 정당 · 후보자에게 유 ·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거나 특정 정당 ·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경우 : 3,000</p> |

| 처분대상 | 관계법조 | 법정 상한액 | 부과기준 |
|--|---|-----------|---|
| | | | <p>②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 록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 니하고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 : 1,500</p> <p>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 표 또는 <u>보도 목적으로</u> 여론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공표 또는 <u>보도는 하지 않은 경</u> <u>우</u> : 1,000</p> |
| 5.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를 포함함)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3 항제5호 · 법 제 108조제3항 및 제4항 | 1,000 | <p>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 론조사를 한 때 : 1,000</p> <p>나.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보 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때 : 750</p> <p>다.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500</p> <p>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여론조사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 때 : 250</p> |
| 16.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 거범죄 조사와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 6 항 제 2 호 · 법 제272조의 2제4항 · 법 제 8조의8제11항 | 300 | 가. 매회 : 300 |
| 24의2.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신 청 변경사항에 대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 | ○ 법 제 261조 제 8 항 제 1 의 2호 · 법 제8 조 의 9 제 4 항 | 100 | <p>가. 신청기한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 니한 때 : 30</p> <p>나. 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 마다 가산액 : 10</p> |
| 38.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 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 니하는 행위 | ○ 법 제261조제 8항제6호 · 법 제272조의2제 4항 · 법 제8 조의8제11항 | 100 | <p>가. 당사자는 매회 : 100</p> <p>나. 기타 관계인은 매회 : 50</p> |

부록 2

선거여론 조사기준

- 제정 2014. 3. 2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4-1호
- 개정 2015. 12. 2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5-1호(전부개정)
- 개정 2017. 1. 2.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7-1호(일부개정)
- 개정 2017. 3. 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7-2호(일부개정)
- 개정 2017. 12. 2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7-3호(일부개정)
- 개정 2019. 7. 1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9-1호(일부개정)
- 개정 2019. 12. 1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9-2호(일부개정)
- 개정 2020. 1. 1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0-1호(일부개정)
- 개정 2021. 2.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1-1호(일부개정)
- 개정 2021. 11. 2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1-2호(일부개정)
- 개정 2023. 11. 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3-1호(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거부 설정을 말한다.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6. “접촉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접촉이 완료된 비율을 말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접촉률(%)} = \frac{I + R}{I + R + eU} \times 100$$

여기서 I는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R은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이하 7호에서 같다), U는 접촉 실패 사례수를 말하며, e는 접촉 실패 사례 중 응답 적격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e = \frac{I + R}{I + R + NE}$$

여기서 NE는 결번을 제외한 비적격 사례수를 말한다.

7. “응답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접촉된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응답이 완료된 비율을 말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응답률(%)} = \frac{I}{I + R} \times 100$$

8.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9.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 ⑦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⑩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70 이상(이하 “권고 무선 응답비율”이라 한다)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⑪ 누구든지 유선전화만을 사용하여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중값 배율)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7 ~ 1.5
2. 연령대별 : 0.7 ~ 1.5
3. 지역별 : 0.7 ~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책·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여론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1. 접촉률
12. 응답률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4. 표본오차
15. 전체 질문지
16.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17.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항제16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에 한함)
 -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한다)에 출연한 자(진행자는

제외한다),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선거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8조의2(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 보도)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공개 관련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12조제1항제15호의 사항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기능개선 완료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피조사자 선정방법

| 조사방법(구성비) | | | | | | | | | | |
|------------|--------|-----------|-------|-------|---------|--|--|--|--|--|
| 피조사자 선정 방법 | 조사대상 | | | | | | | | | |
| | 전체 | 추출률 | | | | | | | | |
| | | 규모 | | | | | | | | |
| | | 구축방법 | | | | | | | | |
| | 표본 추출률 | 조사 대상 추출률 | 구성 비율 | 규모 | | | | | | |
| | | | | 성별 | 남성 | | | | | |
| | | | | | 여성 | | | | | |
| | | | | 연령 대별 | 18세~29세 | | | | | |
| | | | | | 30대 | | | | | |
| | | | | | 40대 | | | | | |
| | | | | | 50대 | | | | | |
| | | | | 지역별 | 60대 | | | | | |
| | | | | | 70세 이상 | | | | | |
| | | | | | A지역 | | | | | |
| | | | | | B지역 | | | | | |
| | | | | | C지역 | | | | | |
| 표본 추출방법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주 : 1. 조사방법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ARS 등)과 각 조사방법별 사용한 구성비(유선전화면접 0%, 무선전화면접 0%) 등을 기재합니다.
2. 조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을 기재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조사인 경우 각 조사방법별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ex, 유선전화면접→ 유권자 40대 이상, 무선전화면접→ 유권자 18세에서 40대 미만) 등을 기재합니다.
3. 표본추출률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률, 즉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체 유권자 대상 무작위전화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등), 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체 구축 DB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기타 표본추출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조사대상 추출률'은 특정 DB 또는 패널을 추출률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고, 해당 추출률의 규모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표본추출 방법은 "RDD, 패널에서 무작위추출, DB에서 무작위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기타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7. 이 서식은 홈페이지 입력방식에 따라 등록(입력)하여야 합니다.

결과분석 자료

I. 응답자 특성

| 구 분 | | 조사완료 | | 기증값 적용 기준 | | 기증값 배율 (B/A) | 비 고 |
|----------|--|---------------|-------|---------------|-------|--------------------|-----|
| | | 사례수(명) (A) | 비율(%) | 사례수(명) (B) | 비율(%) | | |
| 전체 | | | | | | | |
| 성 별 | 남자 여자 | | | | | | |
| 연령 대별 |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 | | | | | |
| 지역별 | ○ ○ 시 □ □ 군 △ △ 군 ■ ■ 구 | | | | | | |

-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기증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조사완료 사례수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의 구성비율에 따라 비례할당한 사례수를 기재합니다.
4.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 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만 18세~30대를 통합할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II.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 분 | | 조사완료 사례수 | | |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 | |
|-----|-------|----------|----|----|---------------|----|----|
| |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 지역별 | 계 | 합계 | | | | | |
| | | 18~29세 | | | | | |
| | | 30대 | | | | | |
| | | 40대 | | | | | |
| | | 50대 | | | | | |
| | | 60대 | | | | | |
| | | 70세 이상 | | | | | |
| | ○ ○ 시 | 소계 | | | | | |
| | | 18~29세 | | | | | |
| | | 30대 | | | | | |
| | | 40대 | | | | | |
| | | 50대 | | | | | |
| | | 60대 | | | | | |
| | | 70세 이상 | | | | | |
| | □ □ 군 | 소계 | | | | | |
| | | 18~29세 | | | | | |
| | | 30대 | | | | | |
| | | 40대 | | | | | |
| | | 50대 | | | | | |
| | | 60대 | | | | | |
| | | 70세 이상 | | | | | |
| | ■ ■ 구 | 소계 | | | | | |
| | | 18~29세 | | | | | |
| | | 30대 | | | | | |
| | | 40대 | | | | | |
| | | 50대 | | | | | |
| | | 60대 | | | | | |
| | | 70세 이상 | | | | | |

-
-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조사완료 사례수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등의 구성비율에 따라 비례할당한 사례수를 기재합니다.
3.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 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만 18세~30대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III. 교차분석표(예시)

-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교차분석, 문항간 교차분석 등을 공표·보도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교차분석표를 함께 등록합니다.
- ※ 사례수를 기재할 경우 조사 완료 사례수가 기준입니다.

1. 후보 지지도

| 구 분 | | 조사 완료 사례수 | A 후보 | B 후보 | C 후보 | 지지후보 없음 | 모름 /무응답 | 가중값 적용 사례수 |
|------------|--|-----------|------|------|------|---------|---------|------------|
| 전 체 | | | | | | | | |
| 성별 | 남자 여자 | | | | | | | |
| 연령대별 |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 | | | | | | |
| 지역별 | ○ ○ 시 □ □ 군 △ △ 군 ■ ■ 구 | | | | | | | |
| 가상대결 | A후보 | | | | | | | |
| | B후보 | | | | | | | |
| | 지지후보 없음 | | | | | | | |
| | 모름/ 무응답 | | | | | | | |
| 당선희망 정당 후보 | A정당 후보 | | | | | | | |
| | B정당 후보 | | | | | | | |
| | 지지후보 없음 | | | | | | | |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 구 분 | | 조사 완료 사례수 | A후보 | B후보 | 지지후보 없음 | 모름 /무응답 | 가중값 적용 사례수 |
|---------------|----------|--|-----|-----|------------|------------|---------------|
| 전 체 | | | | | | | |
| 성별 | 남자 여자 | | | | | | |
| 연령대별 | |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 | | | | |
| 지역별 | | ○ ○ 시 □ □ 군 △ △ 군 ■ ■ 구 | | | | | |
| 후보 지지도 | A후보 | | | | | | |
| | B후보 | | | | | | |
| | C후보 | | | | | | |
| | 지지후보 없음 | | | | | | |
| | 모름/무응답 | | | | | | |
| 당선희망 정당 후보 | A정당 후보 | | | | | | |
| | B정당 후보 | | | | | | |
| | 지지후보 없음 | | | | | | |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당선희망 정당 후보

| 구 분 | | 조사 완료 사례수 | A정당 후보 | B정당 후보 | 지지후보 없음 | 모름 /무응답 | 가중값 적용 사례수 |
|-----------|--|--------------|-----------|-----------|------------|------------|---------------|
| 전 체 | | | | | | | |
| 성별 | 남자 여자 | | | | | | |
| 연령대별 |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 | | | | | |
| 지역별 | ○ ○ 시 □ □ 군 △ △ 군 ■ ■ 구 | | | | | | |
| 후보 지지도 | A후보 | | | | | | |
| | B후보 | | | | | | |
| | C후보 | | | | | | |
| | 지지후보 없음 | | | | | | |
| | 모름/무응답 | | | | | | |
| 가상대결 | A후보 | | | | | | |
| | B후보 | | | | | | |
| | 지지후보 없음 | | | | | | |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가중값 적용 사례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병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 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만 18세~30대를 통합할 경우 교차분석표에서도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록 3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 2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5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시·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7. 2. 24.>

제3조(직무)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2. 24.>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7. 2. 24.>
-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4.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08조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 5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시·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2. 24.〉
1.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7. 2. 24.〉
- 2의2. 법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등 처리에 관한 사무
- 2의3.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3.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 3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상임위원)**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 1. 15.>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통계학·사회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30.>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해당한 때

제9조(위원의 대우)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 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심의 위원회”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중언 · 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기관 · 단체 등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선거여론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 전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4.]

제11조(회의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시 · 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④ 의안표지 · 의안대장 · 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자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문위원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기구

-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협력팀, 등록·분석팀, 심의·지원팀, 조사·단속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7. 2. 24.>
-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시·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 ④ 시·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4.>
- ⑤ 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
 2. 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위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무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5.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교육·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심의 지원에 필요한 사무
- [전문개정 2016. 3. 28.]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시정 등

〈개정 2015. 12. 24.〉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 조사기준을 제정·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4.〉

[본조신설 2015. 12. 24.]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① 심의위원회의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경고·정정 보도문 게재명령 등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2023. 2. 24.〉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

제19조(이의신청) 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요구)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공표·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예산집행 등)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②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발 행 일 2023년 11월

발 행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우 08806)
Tel. (02) 504-0342/0343

| 비 매 품 |